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일	반	회	계
예	비	지	출
승	인	의	건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승기

목 차

I. 결산개요

1. 일반회계	1
가. 세입결산	1
(1) 총 괄	1
(2) 세입 주요내역	1
(3) 분 석	2
나. 세출결산	4
(1) 총 괄	4
(2) 이·전용 등	6
(3) 분 석	9
(4) 프로그램	18
2. 예비비 지출	21
3. 재무결산	23
가. 재정상태 분석	23
나. 재정운영 분석	24
다. 순자산변동 분석	25

II. 검토의견

【총 괄】

1. 대규모 예비비 집행 사업 전반의 과다 추계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 27
 - 가. 개요 27
 - 나. 예비비 집행 사업 소요 추계의 정밀화 필요 30
 - 다. 예비비 집행 사업의 결산자료 제출 및 국회 보고체계 개선 필요 33
2. 인건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이·전용 관행 개선 및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35
 - 가. 개요 35
 - 나. 인건비 소요 추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37
3.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41
 - 가. 개요 41
 -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외출장 배우자 동행 관행 개선 필요 42
 - 다. 출장목적과 방문기관·출장 일정의 정합성 미흡 개선 필요 45
 -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관행 개선 필요 48

【세입결산】

4.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50
 - 가. 개요 50
 - 나.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52

【세출결산】

5.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55
가. 개요	55
나. 궐위 대통령선거 예비비 소요 추계 개선 필요	58
다. 임차료 세목조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61
라. 선거공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63
마. 긴급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집중 완화 및 경쟁성 제고 필요 ..	68
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체계 마련 필요	75
사. 선거관리 절차 변경 시 위원회 의결절차 준수 필요	77
6. 재외선거관리(1131-305)	79
가. 개요	79
나. 재외선거관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액 산정 필요	81
7. 위탁선거관리(1131-306)	83
가. 개요	83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84
8. 선거보전금(1131-307)	86
가. 개요	86
나. 보전비용·부담비용 합산 일괄지급의 회계 구분 관리 필요 ..	87
9.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89
가. 개요	89
나. 선거물품 보관용역 계약 구조의 효율성·경쟁성 검토 필요	90

10.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93
가. 개요	93
나. 국외출장·연구 성과의 환류체계 점검 및 수립 필요	94
11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6
가. 개요	96
나. 심의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재위반 제재 공백의 입법적 해소 지원 필요	97
다. 위원회의 개최 경비의 세부사업 간 분산 집행 해소 필요	100
12.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02
가. 개요	102
나. 격려금 지급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	104
다.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108
라. 집행지침에 근거한 예산 집행 및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113
1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116
가. 개요	116
나. 선거기록관 영구기록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117
14. 청사관리(7132-354)	120
가. 개요	120
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의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121
다. 사회복지요원 배정 소요와 충원율 등을 함께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24

I. 결산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1) 총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2억 9,900만원으로, 41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60.8%인 25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3,5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합계	1,299	4,183	2,545	195.9	60.8	1,635
재산수입	41	30	30	73.2	100	-
경상이전수입	1,229	4,150	2,512	204.4	60.5	1,635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	3	3	10.3	10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입 주요내역

- 2025회계연도 세입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기타관유물대여료, 기타재산이자수입 등 “재산수입” 3,000만원,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경상이전수입” 25억 1,200만원, 기타잡수입 등 “재화및용역판매수입” 3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세입 주요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과부족 (B-A)	세 부 내 역
합 계		1,299	4,183	2,545	1,246	
◦	재산수입	41	30	30	△11	
	▪ 토지대여료	26	15	15	△11	국유재산 허가 사용료
	▪ 기타관유물대여료	5	3	3	△2	임차 관사 등 허가 사용료
	▪ 기타재산이자수입	10	12	12	2	금융기관 예치이자액 등
◦	경상이전수입	1,229	4,150	2,512	1,283	
	▪ 과 태 료	100	286	111	1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 변 상 금	3	0	0	△3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위 약 금	0	4	4	4	계약해지관련 계약보증금등
	▪ 가 산 금	1	1	0	△1	공직선거법 등 위반 과태료 처분에 따른 가산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1,125	3,859	2,397	1,272	후보자 기탁금, 선거보전비용반환금 등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9	3	3	△26	
	▪ 기타잡수익	29	3	3	△26	폐기문서, 불용품 매각대금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입결산액은 2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결산액 56억 7,100만원 대비 55.1% 감소하였음. 이는 선거규모 등의 차이로 후보자의 기탁금 국고귀속액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C/A	C/B	미 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5년	1,299	4,183	2,545	195.9	60.8	1,635	3
2024년	10,017	6,929	5,671	56.6	81.8	1,258	0
증감율	△87.0	△39.6	△55.1	246.1	△25.7	30.0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5년도에는 세입예산액 12억 9,900만원의 195.9%인 25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예산을 초과하였음.

□ 한편, 최근 5년간 세입예산 대비 징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21년 및 2024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에 미달하였고, 나머지 연도에는 징수액이 예산액을 초과함.

[최근 5년간 세입예산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과부족 (C-A)	징수율 (C/A)
2021년	1,537	2,812	1,145	△392	74.5
2022년	4,035	8,099	6,679	2,644	165.5
2023년	863	2,180	871	8	101.0
2024년	10,017	6,929	5,671	△4,346	56.6
2025년	1,299	4,183	2,545	1,246	195.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처럼 징수율 변동 차가 큰 데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실시 여부, 규모, 후보자수, 당선무효자수 등에 따라 연도별 세입액(특히 경상이전수입) 편차가 크고, 기탁금 국고귀속액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과태료는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나. 세출결산

(1) 총괄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3,634억 700만원이고, 예비비 4,804억 4,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6%인 8,15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출예산현액의 3.4%인 282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총계	854,516	363,407	363,407	843,881	815,584
<1100선거의공정한관리>	556,790	66,241	66,241	543,181	516,001
<1131공직선거관리>	441,079	2,876	2,876	397,047	373,818
• 대통령선거(1131-300)	-	-	-	290,061	269,399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87,613	-	-	-	-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45	45	45	44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90	149	149	78	77
• 재외선거관리(1131-305)	8,539	1	1	10,539	8,491
• 위탁선거관리(1131-306)	230	136	136	131	128
• 선거보전금(1131-307)	109,380	-	-	93,734	93,281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227	2,545	2,545	2,459	2,400
<1132정당발전지원>	101,068	52,449	52,449	104,830	104,828
• 정당사무지원(1132-320)	65	66	66	63	61
• 정당보조금(1132-322)	101,003	52,383	52,383	104,767	104,766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98	10,304	10,304	39,657	35,870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920	477	477	459	456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213	1,240	1,240	1,123	1,105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1,155	740	740	7,423	7,34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024	7,439	7,439	30,331	26,64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685	408	408	321	318
<1135선거관리지원>	645	612	612	1,648	1,48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7	93	93	344	337
• 선거방송토론(1135-314)	271	281	281	724	648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77	238	238	580	500
<7100선거관리행정지원>	297,726	297,166	297,166	300,700	299,583
<7101인건비>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 인건비(7101-150)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7111기본경비>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7132기관운영지원>	52,280	49,765	49,765	49,533	48,995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18	336	336	333	32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589	-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393	340	340	333	328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1,413	1,313	1,313	1,309	1,267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99	926	926	919	908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64	137	137	137	13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917	605	605	584	565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9,228	18,491	18,491	18,491	18,460
• 위원회운영(7132-351)	1,685	703	703	703	694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7	1,909	1,909	1,879	1,860
• 청사관리(7132-354)	24,426	25,005	25,005	24,845	24,452
<7136선거행정정보화>	6,769	6,682	6,682	6,682	6,54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28	563	563	563	554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41	6,119	6,119	6,119	5,994
<7137예비금>	0	50	50	50	50
• 예비금(7137-430)	0	50	50	50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이·전용 등

(가) 이·전용

□ 2025회계연도 이·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감소(△88.9)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8,600백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4%인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감소(△89.2%)하였음. 주요 내역은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청산관리경비 10억 8,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4억 2,400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7,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전용(C)	C/A
합 계	363,407	843,881	2,637	0.7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12	0.01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2,625	0.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이·전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1,036	9,315	△8,279	△88.9
전 용	1,601	14,868	△13,267	△8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이 월

□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없고, 전년대비 2,600만원 순감하였음.

[2025회계연도 이월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이월액(C)	C/A
합 계	363,407	843,881	-	-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	-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이월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0	26	△26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불 용

□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8% 수준인 28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6억 8,500만원 대비 256억 1,200만원 증가(953.9%)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232억 2,600만원, 정당발전지원 2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7억 8,300만원, 선거관리지원 1억 6,300만원, 인건비 1억 2,4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 기관운영지원 5억 3,3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1억 3,400만원임.

[2025회계연도 불용내역]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예산액(A)	예산현액(B)	불용액(C)	C/A
합 계	363,407	843,881	28,297	7.8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543,181	27,180	41.0
7100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00,700	1,117	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불용 증감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8,297	2,685	25,612	953.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예비금

☐ 2025회계연도 예비금 예산액은 5,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금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비금	50	5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분 석

(가) 세출결산 전반

-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액(추경포함)은 3,634억 7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 예비비 4,804억 4,800만원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임. 이 중 96.6%인 8,155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282억 9,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 이월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E)	
					금액	(C/A)	(C/B)	금액	(D/B)	금액	(E/B)
363,407	26	480,448	±5,774	843,881	815,584	224.4	96.6	-	-	28,297	3.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2025회계연도가 별도의 공직선거가 없는 해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5.4.4. 대통령 탄핵선고(2024헌나8)에 따라 2025.6.3.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치러짐에 따라 예비비 4,80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에 달함. 2025회계연도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공직선거관리 3,738억 2,000만원, 정당발전지원 1,048억 2,7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58억 7,200만원, 선거관리지원 14억 8,500만원, 인건비 2,293억 5,200만원, 기본경비 146억 3,700만원, 기관운영지원 489억 9,9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65억 4,800만원임.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C)			이월액	불용액
			금액	(C/A)	(C/B)		
2021년	385,228	385,261	359,938	93.4	93.4	64	25,259
2022년	870,615	870,679	839,892	96.5	96.5	122	30,665
2023년	406,700	406,822	399,967	98.3	98.3	1	6,855
2024년	857,227	857,228	854,516	99.7	99.7	26	2,685
2025년	363,407	843,881	815,584	224.4	96.6	-	28,2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4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산 분석 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8,155억 8,400만원임. 이는 예정된 공직선거가 실시된 전년도와 달리, 예산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대통령 궐위선거를 준비·실시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의 예산현액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상승하였기 때문임.
- 둘째, 이월액은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전용액은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각각 88.9%, 89.2% 감소하였음.

(나) 이 · 전용

- 2025회계연도 이·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3%인 10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2억 7,900만원 감소(△88.9)하였음. 주요 내역은 공무원 보수 부족액 9억 8,600백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5,000만원임.
- 2025회계연도 전용액은 전체 예산액의 0.4%인 1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2억 6,700만원 감소(△89.2%)하였음. 주요 내역은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등 청산관리경비 10억 8,700만원, 공무원 보수 부족액 4억 2,400만원,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7,800만원임.

[2025회계연도 이 ·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용	1,036	9,315	△8,279	△88.9
전 용	1,601	14,868	△13,267	△89.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 · 전용액의 비율을 보면 2022년도 및 2024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1.0% 미만이며, 2022년도 이 · 전용액 증가 사유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에 따른 지급 재원 등이 부족함에 따른 것이며,

2024년도 이·전용액 증가 사유는 국회의원선거 경비, 공무원 보수, 청사 공공요금, 부담비용 청구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재원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임. 다만, 2024년, 2025년 모두 공무원 보수 부족과 각급 위원회 청사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비 부족액으로 인해 이·전용이 발생하였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이·전용액	257	81,349	3,673	24,183	2,637
예산액 대비 이·전용액 비율	0.07	9.3	0.9	2.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전용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전용 사유	이·전용액
2021년	계	257
	▪ 보궐선거 사전투표사무원 낙상사고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	1
	▪ 공공요금 부족	207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부족	11
	▪ 유권자의식조사 연구용역비 부족액	11
	▪ 사회복무요원 여비 부족액	11
	▪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수당·실비	7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인식개선프로그램 개발비 부족	6
	▪ 국가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비 부족	3

연 도	이 · 전용 사유	이 · 전용액
2022년	계	81,349
	▪ 제20 대통령선거 투표시간 연장 관련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등 부족액(이용 434, 전용 50182)	54,566
	▪ 코로나19 예방·대책비용 전용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17,400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경비 및 보전금 부족	4,940
	▪ 청년추천보조금 지급 자원 부족	4,400
	▪ 유상임차청사 임차료 부족	28
	▪ 기타직보수 부족	15
2023년	계	3,673
	▪ 보안컨설팅 후속 조치에 따른 전산장비 등 구입 비용	2,657
	▪ 4분기 기관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부족액	1,015
	▪ 국선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유권자 의식조사 비용	1
2024년	계	24,183
	▪ 수검표 도입 및 (사전)투표 참관인 증가 등에 따른 국선 선거경비	14,181
	▪ 공무원 보수 부족액	5,943
	▪ 부담비용 청구대상 정당수 증가에 따른 선거보전금 부족액	2,368
	▪ 각급위원회청사 공공요금 부족액	1,475
	▪ 시스템통합 유지보수 컨설팅 자원 부족액	140
	▪ 직원 상시학습 여비 부족액	72
	▪ 재외선거관련 인력운용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액	4
2025년	계	2,637
	▪ 공무원 보수 부족액	1,410
	▪ 청사관리 부족액	1,087
	▪ 선거재해보상금 부족액	128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부족액	1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이 월

□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없고, 전년대비 2,600만원 순감하였음.

[2025년도 이월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이 월	-	26	△26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에 대한 이월액의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0.06%, 2022년도에는 0.01%, 2023년도에는 0.001%, 2024년도에는 0.003%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2025년도에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아, 이월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0.0185% 수준으로 예산액 대비 매우 적은 수준임.

[최근 5년간 이월액 비율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이 월 액	64	122	1	26	-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	0.06	0.01	0.001	0.003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이월액 및 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이월사유	이월액
2021년	계	64
	▪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 차질이 발생하여 선거장비 지원센터 운반장비(지게차 및 핸드팔레트) 납품 지연에 따른 대금 미지급금	64
2022년	계	122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레미콘 공급 차질 등 납품 지연에 따라 발생한 공기연장에 대한 미지급금	122
2023년	계	1
	▪ 12월 카드사용분 대금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금	1
2024년	계	26
	▪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보전 유예금	26
2025년	계	-
	▪ 해당없음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불 용

- 2025회계연도 불용액은 282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26억 8,500만원 대비 256억 1,200만원 증가(953.9%)하였음. 불용내역은 단위사업별로 공직선거관리 232억 2,600만원, 정당발전지원 200만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37억 8,300만원, 선거관리지원 1억 6,300만원, 인건비 1억 2,400만원, 기본경비 3억 2,100만원, 기관운영지원 5억 3,300만원, 선거행정정보화 1억 3,400만원임.

[2025년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4년도	증감	증감율
불 용	28,297	2,685	25,612	953.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2021년도 6.6%, 2022년도 3.5%, 2023년도 1.7%, 2024년도 0.3%, 2025년도 7.8%로 올해 불용액 비율이 최고이나, 예비비, 이·전용등을 고려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3.4%임. 다만, 불용액은 2022년도 다음으로 많은 규모임.

[최근 5년간 불용액 비율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 산 액	385,228	870,615	406,700	857,227	363,407
불 용 액	25,259	30,665	6,855	2,685	28,297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	6.6	3.5	1.7	0.3	7.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구체적인 불용사유는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등이며, 2025년도의 경우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경비(예비비)가 불용액의 94.7%를 차지하였음.

[최근 5년간 불용액 및 불용사유]

(단위: 백만원)

연 도	불용사유	불용액
2021년	계	25,259
	▪ 인건비 집행잔액	13,694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사업 규모 축소·미실시	7,61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3,950
2022년	계	30,665
	▪ 정당보조금 집행잔액	5,624
	▪ 인건비 집행잔액	3,706
	▪ 선거보전금 집행잔액	2,275
	▪ 기타 267개 위원회 집행잔액	19,060
2023년	계	6,855
	▪ 인건비 집행잔액	1,153
	▪ 기타 269개 위원회 집행잔액	5,702
2024년	계	2,685
	▪ 인건비 집행잔액	364
	▪ 전산운영경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72
	▪ 위법행위예방활동 집행잔액	26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786
2025년	계	28,297
	▪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경비(예비비) 집행잔액	26,793
	▪ 270개 각급 위원회 집행잔액	1,5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프로그램

(가)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110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은 “선거의공정한관리(1100)” 및 “선거관리행정지원(7100)”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1100)”는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선거서비스를 제공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 표와 같이 i) 공직선거관리(1131), ii) 정당발전지원(1132), iii)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1133), iv) 선거관리지원(1135)의 4개 단위사업과 각 단위사업 내 2~8개의 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5회계연도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1공직선거관리>	441,079	2,876	2,876	397,047	373,818
• 대통령선거(1131-300)	-	-	-	290,061	269,399
•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287,613	-	-	-	-
• 전국동시지방선거(1131-302)	-	45	45	45	44
•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90	149	149	78	77
• 재외선거관리(1131-305)	8,539	1	1	10,539	8,491
• 위탁선거관리(1131-306)	230	136	136	131	128
• 선거보전금(1131-307)	109,380	-	-	93,734	93,281
•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35,227	2,545	2,545	2,459	2,400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1132정당발전지원>	101,068	52,449	52,449	104,830	104,828
• 정당사무지원(1132-320)	65	66	66	63	61
• 정당보조금(1132-322)	101,003	52,383	52,383	104,767	104,766
<1133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3,998	10,304	10,304	39,657	35,870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920	477	477	459	456
•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213	1,240	1,240	1,123	1,105
•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1,155	740	740	7,423	7,345
•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10,024	7,439	7,439	30,331	26,648
•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1133-334)	685	408	408	321	318
<1135선거관리지원>	645	612	612	1,648	1,485
•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7	93	93	344	337
• 선거방송토론(1135-314)	271	281	281	724	648
•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77	238	238	580	5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7100)

□ “선거관리행정지원(7100)”은 선거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기본경비를 지원하며, 선거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래 표와 같이, i) 인건비(7101), ii) 기본경비(7111), iii) 기관운영지원(7132), iv) 선거행정정보화(7136), v)예비금(7137)의 5개의 단위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내 1~11개의 사업 등 2025회계연도 기준 총 15개의 세부사업¹⁾으로 구성됨.

1) 2024회계연도 기준 총 16개 세부사업이나,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사업이 2025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2025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15개 세부사업임.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 결산	2025년			
		예산액		예산 현액	지출액
		본예산	추경		
<7101인건비>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 인건비(7101-150)	224,138	225,570	225,570	229,476	229,352
<7111기본경비>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4,540	15,099	15,099	14,959	14,637
<7132기관운영지원>	52,280	49,765	49,765	49,533	48,995
• 법제지원및법규운용(7132-310)	418	336	336	333	328
• 선거관리역량강화(7132-340)	589	-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7132-343)	393	340	340	333	328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1,413	1,313	1,313	1,309	1,267
• 국제교류협력(7132-345)	1,099	926	926	919	908
•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7132-347)	164	137	137	137	137
• 차량및물품관리(7132-349)	917	605	605	584	565
•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19,228	18,491	18,491	18,491	18,460
• 위원회운영(7132-351)	1,685	703	703	703	694
•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1,947	1,909	1,909	1,879	1,860
• 청사관리(7132-354)	24,426	25,005	25,005	24,845	24,452
<7136선거행정정보화>	6,769	6,682	6,682	6,682	6,548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528	563	563	563	554
•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6,241	6,119	6,119	6,119	5,994
<7137예비금>	0	50	50	50	50
• 예비금(7137-430)	0	50	50	50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예비비 지출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배정액은 대통령 선거관리 2,900억 6,100만원, 재외선거관리 105억 3,800만원, 선거보전금 937억 700만원, 정당보조금 523억 8,300만원, 공명선거기반 조성 66억 9,500만원, 위법행위예방활동 235억 100만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2억 6,000만원, 선거방송토론 4억 5,000만원, 선거여론조사심의 3억 5,300만원, 인건비 24억 9,800만원으로 총 4,804억 4,800만원이며, 이 중 4,53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267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예비비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대통령선거관리	290,061	269,399	20,662
재외선거관리	10,538	8,491	2,047
선거보전금	93,707	93,263	444
정당보조금	52,383	52,383	-
공명선거기반조성	6,695	6,619	76
위법행위예방활동	23,501	20,086	3,415
인터넷심의기반조성	260	259	1
선거방송토론	450	381	69
선거여론조사심의	353	276	77
인건비	2,498	2,498	-
합 계	480,448	453,654	26,79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관리에는 예비비 2,900억 6,1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2,693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06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선거벽보 첩부비용 등 선거운동관리 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고, 참관인 신고·선정 인원도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참관인 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함.
- 재외선거관리에는 예비비 105억 3,8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 중 84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억 4,7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궐위선거를 위한 재외선거관이 단신 부임함에 따라 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외공관의 일용인부임 등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데서 기인함.
- 위법행위예방활동에는 예비비 235억 1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이 중 200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신고·제보 건수 감소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이 예상보다 줄어든데 따른 것임.

3. 재무결산

가. 재정상태 분석

- 자산은 7,880억 7,600만원으로 전년 7,859억 3,500만원 대비 0.3% 증가하였음. 금융자산은 93억 9,400만원으로 전년 89억 4,200만원 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이는 변상금 등에 대한 미수제재금수익과 미수기타수익,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유·무형자산은 7,676억 6,100만원으로 전년 7,659억 1,900만원 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내자산기부 등으로 토지가 감소하였으나 취득 등으로 건물과 구축물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타자산은 110억 2,000만원으로 전년 110억 7,400만원 대비 0.5%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의선급비용 감소에서 기인함.
- 부채는 26억 5,400만원으로 전년 60억 3,100만원 대비 56.0% 감소하였음. 차입부채는 26억 5,200만원으로 전년 60억 3,100만원 대비 56.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금융리스부채의 상황에 따라 감소함. 기타부채는 200만원으로 전년 100만원 대비 100%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의선수수익 증가에서 기인함.
- 순자산은 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7,854억 2,200만원이며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음.

[2025회계연도 재정상태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 산	788,076	785,935	2,141	0.3%
부 채	2,654	6,031	△3,377	△56.0%
순자산	785,422	779,904	5,51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정운영 분석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8,722억 2,000만원이며 전년 8,713억 1,500만원 대비 0.1% 증가함.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5,241억 6,1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직선거관리 경비 감소에서 기인함. 관리운영비는 3,486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임. 비배분수익은 6억 3,4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 감소하였으며, 이는 기타이전비용 미발생에서 기인한 것임.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프로그램순원가	524,161	534,159	△9,998	△1.9%
II. 관리운영비	348,692	339,196	9,496	2.8%
III. 비배분비용	1	2	△1	△50.0%
IV. 비배분수익	634	2,042	△1,408	△6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2,220	871,315	905	0.1%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872,220	871,315	905	0.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순자산변동 분석

□ 기말순자산액 7,854억 2,200만원은 기초순자산액 7,799억 400만원에서 재정운영결과인 8,722억 2,000만원을 차감하고, 재원의조달 및 이전액 8,803억 7,600만원과 조정항목 △26억 3,700만원을 더한 값임.

[2025회계연도 순자산변동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A)	2024(B)	증 감 (A-B)	
			금 액	비 율
I. 기초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II. 재정운영결과	872,220	871,315	905	0.1%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880,376	910,096	△29,720	△3.3%
IV. 조정항목	△2,637	△1,828	△809	△44.3%
V. 기말순자산 (I - II + III + IV)	785,422	779,904	5,518	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주요 순자산변동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2025년 주요순자산 변동내역 및 금액]

- 기초순자산	779,904백만원
- 재정운영결과	872,220백만원
- 재원의 조달	886,071백만원
·국고수입	815,584백만원
·국고이전수입	0백만원
·사회보험수익	0백만원
·부담금수익	0백만원
·제재금수익	2,322백만원
·기타이전수익	70,255백만원
- 재원의 이전	5,696백만원
·국고이전지출	2,545백만원
·세출예산지출액	0백만원
·기타이전비용	3,151백만원
- 조정항목	△2,637백만원
·자산재평가이익	△2,637백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II. 검토의견

【총 괄】

1. 대규모 예비비 집행 사업 전반의 과다 추계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는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 실시로 세출 본예산(3,634억원)의 1.3배가 넘는 4,804억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이례적인 회계연도로, 국회의 사전심의없이 집행된 예비비의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결산 단계의 검증이 더욱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비비가 배정된 10개 세부사업에서 총 272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위원회 전체 불용액의 96.2%에 해당하는바, 궐위선거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불용률이 최대 97%에 이르는 등 예비비 신청 단계의 소요 추계가 정밀하지 못하였으므로, 과거 집행 실적자료, 선거 유형별 특성, 선거 발생 계기 등을 기반으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면밀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예비비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과 세부 집행내역을 별도로 제시하는 등 국회의 결산심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양식과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3,634억 700만원이었으나, 2025. 4. 4.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2025. 4. 4. 2024헌나8)에 따라 2025. 6. 3.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되고 이에 대통령선거를 위한 경비로써 총 4,804억 4,8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어, 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의 약 2.3배까지 증가하였고 이 중 8,155억 8,400만원이 집행되었음(본예산 대비 224.4%, 예산현액 대비 96.6%).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2025 결산	집행률 (본예산 대비)	집행률 (현액 대비)
세입	871	5,671	1,299	-	-	1,299	2,545	195.9	195.9
세출	399,967	854,516	363,407	26	480,448	843,881	815,584	224.4	96.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2항은 예비비를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22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예비비는 국회가 사업별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의결하는 예외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사후적으로 그 집행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결산심사)가 예비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임.

2)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2025년은 최근 4년 내 처음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회계연도이며 그 규모 또한 이례적으로 크고, 2025년 예비비는 아래와 같이 10개 세부사업에 배정되었으며, “대통령 궐위선거에 따른 선거경비”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경비”를 위한 것임.

<2025회계연도 예비비 배정 및 집행·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코드)	본예산	예비비 배정액	예산현액 (B)	집행액	불용액 (E)	불용률 (E/B)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	290,061	290,061	269,399	20,662	7.1
재외선거관리(1131-305)	1	10,538	10,539	8,491	2,048	19.4
선거보전금(1131-307)	-	93,707	93,733	93,281	452	0.5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3	260	344	337	7	2.0
선거방송토론(1135-314)	281	450	724	648	76	10.5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238	353	580	500	80	13.8
정당보조금(1132-322)	52,383	52,383	104,766	104,766	0	0.0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740	6,695	7,423	7,345	78	1.1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7,439	23,501	30,329	26,648	3,681	12.1
인건비(7101-150)	225,570	2,498	229,476	229,352	124	0.1
합 계	286,745	480,446	767,976	740,767	27,208	3.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예비비 집행 사업 소요 추계의 정밀화 필요

-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의 전체 불용액은 282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4%이고, 예비비가 배정된 10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총 272억 800만원으로, 불용률은 3.5%이며, 불용액 기준 전체 불용액의 96.2%에 해당하는 불용이 예비비가 배정된 사업에서 발생함. 즉 2025년 불용의 대부분이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3,407	363,407	843,881	815,584	0	28,297	3.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별 사업별로 보면 재외선거관리의 불용률이 19.4%로 가장 높고, 선거여론조사심의 13.8%, 위법행위예방활동 12.1%, 선거방송토론 10.5% 등 4개 사업이 10%를 초과하였으며, 대통령선거관리도 불용률은 7.1%이지만 불용액의 절대 규모(206억 6,200만원)는 다른 세부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임.
- 특히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내 “당내경선관리” 내역사업은 예비비 9억 4,8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2,800만원에 그쳐

불용률이 97.0%에 이르렀는바, 이는 과거 당내경선 위탁³⁾ 정당 수와 경선 실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궐위선거의 촉박한 일정과 기존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정당의 경선 위탁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2025회계연도 대통령선거 내역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대통령선거관리	-	-	-	±1,201	290,061	290,061	269,399	-	20,662
-선거관리일반	-	-	-	500	31,060	31,560	29,847	-	1,713
-당내경선관리	-	-	-	-	948	948	28	-	920
-선거운동관리	-	-	-	-	40,456	40,456	37,875	-	2,581
-사전투표관리	-	-	-	△629	83,758	83,129	79,845	-	3,284
-선상투표관리	-	-	-	△41	524	483	401	-	82
-투표관리	-	-	-	170	100,986	101,156	92,947	-	8,209
-개표관리	-	-	-	-	32,329	32,329	28,456	-	3,87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공직선거법」 제57조의4(당내경선사무의 위탁) ①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한다.

- 물론 궐위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예비비 산정에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것이나, ① 등록 후보자 수와 참관인 신고 인원을 직전 선거의 실적을 기준으로만 편성한 점, ② 재외선거관의 단신부임 가능성이나 정책토론회 개최 가능 횟수의 법정 제약과 같이 궐위선거라는 조건 자체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 가능한 요소들이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용의 상당 부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추계 방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그 신청 규모가 과다할 경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재정통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고 긴급한 소요라는 요건과 더불어 그 금액 수준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청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유형별(임기만료·궐위·재보궐) 과거 집행 실적자료, 선거 유형별 특성, 선거 발생 계기 등을 기반으로 향후 예비비 신청 시 면밀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비비 집행 사업의 결산자료 제출 및 국회 보고체계 개선 필요

- 2025회계연도는 예비비 규모가 본예산을 초과하는 세부사업이 다수 발생하여, 통상적인 결산 서식(본예산 대비 집행률 등)으로는 그 적정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치가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본예산 100만원이었지만 예비비 105억 3,800만원이 배정되어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849,100.0%에 이르고, 공직선거관리 단위사업 전체로도 본예산 28억 7,600만원 대비 결산액이 3,738억 1,800만원으로 12,997.9%의 집행률을 보임.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표 중 일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2026 예산
				예산		결산 (B)	집행률 (B/A)	
				본 예산	추경 (A)			
총계		399,967	854,516	363,407	363,407	815,584	224.4	484,745
프로 그램	1100 선거의공정한관리	113,247	556,790	66,241	66,241	516,001	779.0	152,908
단위 사업	1131 공직선거관리	47,964	441,079	2,876	2,876	373,818	<u>12,997.9</u>	16,363
세부 사업	-재외선거관리(1131-305)	7,451	8,539	1	1	8,491	<u>849,100.0</u>	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수치는 그 자체로 부적정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예비비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통상적 집행률 지표만으로는 국회의 결산심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규모 예비비가 투입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현행 결산자료 및 국회 제출 서식만으로는 실제 예산규모와 집행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과 세부 집행 내역을 별도로 제시하는 등 국회의 결산심사에 필요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양식과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인건비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이·전용 관행 개선 및 적정 인건비 예산 편성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20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예산을 이·전용하였고 최종적으로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인건비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연례적인 연말 인건비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5회계연도 인건비 사업(7101-150) 예산은 본예산 2,25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회계연도 중 궐위선거 관련 예비비 24억 9,800만원(초과근무수당·재외근무수당 소요)이 배정되었으며, 연가보상비(110-05)에서 10억 8,200만원, 기타직보수(110-02)에서 2억 1,000만원을 보수(110-01)로 전환하는 세목조정(±12억 9,200만원)과 타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이·전용 유입(14억 800만원)을 거쳐 예산현액이 2,294억 7,600만원까지 증액되었고, 이 중 2,293억 5,200만원을 집행(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9.9%)하고 1억 2,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건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본예산	이·전용	세목조정	예비비	예산현액 (B)	집행액 (C)	불용액 (E)	집행률 (C/B)
225,570	+1,408	±1,292	2,498	229,476	229,352	124	99.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건비 이·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5. 12. 16.~12. 17. 이틀 사이에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청사관리(7132-354) 등 최소 20개 이상의 세부사업에서 일반수용비(210-01), 일반용역비(210-14), 여비(220목), 사업추진비(240-01), 자산취득비(430-01) 등이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인건비 보수(110-01)에 일괄 이·전용되었음.

<2025년 말 인건비 이·전용 유입 내역>

(단위: 백만원)

이·전용 원천 세부사업	금액	일자	원천 세목(예시)
위법행위예방활동(1133-333)	609	'25.12.16.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임차료 등
청사관리(7132-354)	160	'25.12.16.	임차료, 유류비, 국내여비, 시설설계비 등 10개 세목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117	'25.12.16.	일반수용비(65), 공공요금및제세(20), 국외업무여비(6), 정책연구비(6) 등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	87	'25.12.16.	국외업무여비(42), 일반용역비(28) 등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86	'25.12.16.	일반용역비(34), 시설장비유지비(25), 공공요금및제세(24) 등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21	'25.12.16.	임차료(2) 등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191	'25.12.16.	국외업무여비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1133-330)	18	'25.12.16.	일반수용비(17), 국내여비(1)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12	'25.12.16.	일반수용비 등
선거여론조사심의(1135-315)	11	'25.12.16.	일반수용비 등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9	'25.12.16.	일용임금(6), 고용부담금(2), 국내여비(1)
선거방송토론(1135-314)	7	'25.12.16.	일반수용비 등
위탁선거관리(1131-306)	5	'25.12.17.	국내여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4	'25.12.16.	사업추진비
그 외(정당사무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국제교류협력, 차량및물품관리, 선거연수원운영 등)	71	'25.12.16~17.	각 사업별 집행잔액
합 계	1,408	이·전용 사유: 전 건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인건비 소요 추계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 위와 같이 세목조정, 이·전용, 예비비 등을 통해 인건비 예산 현액을 본예산 대비 39억 600만원(1.7%) 증액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1억 2,4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연말에 20여개 사업의 집행 잔액을 일괄적으로 이·전용하였음에도 그 일부를 다시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는 연말 이·전용 규모 자체가 실소요를 초과하여 산정되었음을 의미함.

<인건비 세목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본예산	조정 후 현액	집행액	불용액
보수(110-01)	220,729	225,927	225,859	68
기타직보수(110-02)	3,127	2,917	2,896	21
연가보상비(110-05)	1,714	632	597	35
합 계	225,570	229,476	229,352	12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건비 부족의 원인에 대하여 ① 2024회계연도 인건비 편성 시 정근수당 46억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나, 2025년도에 과소 편성된 예산이 복구된 수준(40억원 정도)으로만 증액되어 처우개선 부분(3%, 65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② 2025. 1.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 상한(1,800만원→2,310만원) 및 가족수당이 인상되었으나 해당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연중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계연도 말 이월에 걸쳐 일괄 이·전용한 것은 수당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수당규정 개정이 회계연도 개시 초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소요 증가는 회계연도 개시 직후부터 인지할 수 있었던 사항인바 예측 가능한 추가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각 사업 입장에서는 본래 목적의 사업비가 연말에 인건비 재원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사업 부서가 연말 집행잔액을 인건비 전용에 대비하여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유인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 특히 인건비의 이·전용 문제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인건비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 방지 및 휴직자 추계 등 인력관리 방안 마련 필요”로 이미 지적된 사항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인건비 추계를 면밀히 살펴 예산의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음. 물론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정한 인건비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있으나,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4년 59억 4,300만원, 2025년 14억 800만원의 이·전용과 12억 9,200만원의 세목조정을 실시하는 등 연말에 다른 사업의 잔액을 일괄적으로 이·전용하여 부족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음.

<최근 4년간 인건비 이·전용 및 불용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이·전용	세목조정	불용액	비고
2022	△4,384	-	3,706	대선 방역물품 재원으로 유출 후 불용 (편성단가-실집행 차이)
2023	-	-	1,153	집행잔액
2024	+5,943	±593	364	복직자 급증으로 타 사업에서 유입 (‘24 결산 지적)
2025	+1,408	±1,292	124	연말 일괄 유입 후 불용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예산의 이·전용은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4)의 예외로서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연례적·일괄적인 이·전용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음.

4)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수당규정 개정 등 연중 발생하는 인건비 소요 변동에 대한 수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② 정·현원 관리 및 휴·복직 예측을 포함한 인건비 소요의 정확한 추계와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③ 연말에 집중되는 과다한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국외출장 관리의 적정성 제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국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을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일정에서의 역할 등을 바탕으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일정과 내용을 출장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기재·공개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위원·직원 국외출장에서 출장 목적과 방문기관·일정 간의 정합성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국외출장 심사 시 방문기관의 사전 확정 여부와 목적 부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위원 국외출장은 잔여 임기와 출장 성과의 기관 환류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수 위원이 단기간에 유사한 목적으로 연이어 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시기와 인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외출장은 위원장·위원의 선거제도 교류 및 재외선거 평가 목적 출장, 직원의 역량강화 국외연수, 재외선거관 파견, 외국 선거 참관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기본경비(7111-250)의 국외업무여비·국외교육여비, 재외선거관리(1131-305)의 국외업무여비,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등 복수의 사업에서 집행되고 있음.
- 국회에 제출된 국외출장 내역 자료(2021~2025년)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출장경비의 지원 근거, 출장목적과 실제 일정의 정합성, 출장 시기의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확인되었음.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외출장 배우자 동행 관행 개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국외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2년 이후 실시된 위원장 국외출장 3건이 모두 배우자 동반(“동부인”)으로 이루어졌고, 그 경비는 국외출장 예산으로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외출장 실시 내역(2022~2025년)>

(단위: 천원)

출장기간	출장국가(도시)	출장목적	수행인원	소요경비	비고
2022.12.2. ~12.10. (7박9일)	호주 (시드니·캔버라), 뉴질랜드 (웰링턴·오클랜드)	선거·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직원 3명	64,266	동부인
2024.11.9. ~11.17. (7박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베를린), 에스토니아 (탈린)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 및 협력	직원 3명	73,297	동부인
2025.11.14. ~11.23. (8박10일)	덴마크(코펜하겐), 스웨덴(스톡홀름)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	직원 3명	83,958	동부인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여비 규정⁵⁾에 따라 위원장 국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 비용을 지급·정산해왔으며,

5)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원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별표 9]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해당자	지급기준
1. 공무원의 배우자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 등급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 업무수행상 필요성, 관련 예산편성 여부, 타 헌법기관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였다고 밝히면서, 다만 국민적 눈높이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음.⁶⁾

□ 다만,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라는 사정만으로 국외출장 시 배우자의 동행 필요성이 일률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배우자에 대한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 일정에서의 역할 및 동행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당 출장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별도의 초청 사실이나 구체적인 동행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 배우자 동행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실제로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결과보고서에는 주호주·주뉴질랜드 대사관저 오찬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가 참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배우자가 공식 일정에 동행하였음이 확인되나, 이후 출장 두 건에서는 배우자의 참석 일정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며, 호주 및 뉴질랜드 출장에서도 같이 일반적으로 대사관 방문 또는 만찬 행사에서 동행하고 별도로 상대국에서의 초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노태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외출장 건에 대한 출장비 중 배우자 관련 경비 약 4,700만원을 2026.7.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였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외출장 주요일정 중 배우자 참석 여부>

출장 년도	출장국가	주요일정	(결과보고서상)* 배우자 참석 여부
2022	호주, 뉴질랜드	주시드니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 간담회	X
		주호주 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O
		주뉴질랜드 대사관 방문 및 간담회	O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방문 및 면담	X
		주오克兰드 대한민국 부관장 및 재외선거관리위원 오찬 및 간담회	X
2024	독일, 에스토니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면담	X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총영사 면담	X
		주독일 대사 면담	X
		주에스토니아 대사 면담	X
		에스토니아선거위원회 위원장 면담	X
2025	덴마크, 스웨덴**	덴마크 전국지방자치단체연합 면담	X
		코펜하겐 시청 면담	X
		스웨덴 선거관리청 면담	
		덴마크 선거현장 참관	
		주덴마크 대사관 면담	
		주스웨덴 대사관 면담	
		International Idea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 참전기념비 헌화	

주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사 및 총영사 면담시 배우자가 동석하여 참석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관련 출장 결과보고서상 참석대상에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음.

주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덴마크, 스웨덴 출장에서 배우자는 개인사정으로 조기귀국하여 스웨덴 일정을 소화하지 않았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국외출장 시 배우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상대국 또는 방문기관의 별도 초청 여부, 공식 일정에서의 역할 및 동행 필요성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여 세부 출장일정을 수립하는 한편, 배우자의 동행 일정과 관련 내용을 출장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등에 명확히 기재·공개함으로써 배우자 동행의 필요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다. 출장목적과 방문기관·출장 일정의 정합성 미흡 개선 필요

- 위원장·위원·직원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출장 목적과 실제 방문기관·일정이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음.
- 첫째, 2022년 위원장 호주·뉴질랜드 출장은 “호주·뉴질랜드의 선거·정치제도 청취” 등을 방문목적으로 하고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필요성” 등을 삼았으나, 정작 호주에서는 선거관리기관(호주 선거위원회)에 대한 방문 일정 자체가 없었고 대사관 오찬과 교민 간담회 위주로만 일정이 진행되었으며, 선거기관 방문은 뉴질랜드 선거위원회 1회에 그쳤음. 더욱이 논의 의제에 관해 현지에서 청취한 의견은 “호주는 우편배송이 늦고 이중투표가 사실상 가능하므로 호주의 사례를 보고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우편투표에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출장목적 또는 논의의제와 방문지·의견수렴 대상의 선정이 정합적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됨.
- 둘째, 2024년 위원장 독일·에스토니아 출장은 “해외 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핵심 일정인 독일 연방선거위원회 위원장 면담이 출장 기간 중 취소 통보되어 독일에서는 선거관리기관 면담이 전무하였고, 실제 성사된 선거관리기관 면담은 에스토니아 선거위원회 1건에 그쳤음. 또한, 2025년 위원장 덴마크

· 스웨덴 출장 주요일정 중 “코펜하겐 시청 면담” 건은 “코펜하겐 시청 문화여가국장”을, “스웨덴 선거관리청 면담” 건은 “선거총괄 팀장 등 사무국 직원 2명”을 면담 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원장의 위상 등을 고려한 면담 구성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셋째,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의 경우 방문지에 마드리드·바르셀로나·세비야(스페인), 프라하(체코), 밀라노·로마·피렌체(이탈리아), 자그레브(크로아티아) 등 주요 관광도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문적인 업무역량 강화 및 자료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연수로서 방문지와 일정의 구성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워싱턴 D.C.·뉴욕(미국), 로마·피렌체(이탈리아) 등 일부 도시는 연도별 연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적인 방문국 설정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직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내역>

(단위: 천원)

출장 년도	출장 일정	출장 인원	출장국가(도시)	소요경비
2022	11.03.~11.11.	9	스페인(마드리드, 세비야, 바르셀로나)	27,000
	10.26.~11.03.	9	체코(프라하), 헝가리(부다페스트)	27,000
	10.13.~10.20.	9	독일(베를린, 라이프치히, 포츠담, 드레스덴)	27,000
	10.19.~10.28.	8	크로아티아(자그레브), 튀르키예(이스탄불)	24,000
	10.12.~10.19.	10	튀르키예(앙카라), 그리스(아테네)	30,000
	10.18.~10.27.	10	이탈리아(밀라노), 프랑스(파리)	30,000
	10.31.~11.07.	10	영국(런던, 스코틀랜드)	30,000
2023	05.23.~06.01.	8	호주(캔버라, 시드니)	14,400

	06.07.~06.15.	7	오스트리아(비엔나)	12,600
	06.17.~06.26.	9	노르웨이(베르겐, 스타방에로, 오슬로)	16,200
	06.27.~07.06.	7	싱가포르, 태국(방콕, 치앙마이)	12,600
	06.29.~07.07.	9	일본(삿포르, 도쿄, 오사카)	27,000
	07.11.~07.20.	9	프랑스(파리), 스위스(인터라켄, 취리히)	27,000
	08.28.~09.04.	6	대만(타이베이)	10,800
	08.30.~09.08.	6	스웨덴(스톡홀름)	10,800
	09.03.~09.12.	6	뉴질랜드(오클랜드, 퀸스타운)	10,800
	09.07.~09.14.	7	캐나다(퀘벡, 오타와)	21,000
	09.16.~09.25.	10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30,000
	09.12.~09.21.	6	독일(베를린), 체코(프라하)	10,800
	09.06.~09.15.	8	미국(워싱턴, 뉴욕)	14,400
2024	11.02.~11.09.	6	에스토니아(탈린)	20,597
	11.10.~11.17.	8	미국(워싱턴D.C., 뉴욕)	36,146
	11.24.~12.01.	7	영국(런던)	25,769
2025	11.02.~11.09.	6	미국(워싱턴 D.C., 뉴욕)	38,392
	11.07.~11.15.	5	이탈리아(로마, 피렌체)	22,972
	11.22.~11.30.	6	오스트리아(빈), 크로아티아(자그레브)	29,410
	10.18.~10.25.	6	호주(시드니, 캔버라)	24,934
	11.22.~11.29.	7	프랑스(파리), 독일(비스바덴, 프랑크푸르트)	33,711
	11.08.~11.16.	7	스페인(바르셀로나, 마드리드)	43,157
	11.24.~11.28.	6	일본(도쿄, 요코하마)	12,83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 시 ① 방문기관과의 면담이 사전에 확정되었는지, ② 방문지·의견수렴 대상이 출장 목적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지, ③ 유사한 정보를 재외공관·주재관 또는 문헌조사로 취득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면담 취소 등으로 출장목적 달성이 곤란해진 경우의 일정 조정·축소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관행 개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외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21~2024년에는 위원의 국외출장이 사실상 전무(2022년 오스트리아 대선 참관 1건)하였으나, 2025년 11월 한 달 동안에만 위원 3명이 각각 직원 3명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 등”을 명목으로 순차적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음.

<2025년 11월 위원 국외출장 실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위원임기	출장기간	소요 경비	출장국가 (도시)	주요일정
위원 A	2020.3.19 ~2026.3.18	2025.11.5. ~11.12.	33,963	영국 (런던)	영국 대사(대리) 면담
					영국 선거위원회 방문
					재외선관위원 면담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대사 면담
					룩셈부르크 선관위 방문
					재외선관위원 면담
위원 B	2020.3.19 ~2026.3.18	2025.11.10. ~11.17.	31,049	캐나다 (토론토)	토론토 총영사 면담
					재외선관위원 면담
					토론토 한인회장 면담
				미국 (댈러스)	댈러스 출장소장 면담
					재외선관위원 면담
					댈러스 한인단체 면담
위원 C	2021.1.8 ~2027.1.7	2025.11.15. ~11.23.	42,495	브라질 (상파울루)	상파울루한국교육원 방문
					브라질한인회 방문
					재외선관위원 면담
					상파울루 총영사 면담
				칠레 (산티아고)	칠레선거청 방문
					재외선관위원 면담
					칠레 대사 면담
					칠레한인회 방문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같은 11월 기간 동안 위원장은 2025.11.14.~11.23. 덴마크, 스웨덴 등을 방문함.

- 그런데 위 출장 중 2건(위원 A와 B)은 2026년 3월 임기만료 예정인 위원들을 대상으로 임기만료 약 4개월 전에 실시한 것임. 통상적으로 국외출장은 해외 제도·사례 조사,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출장 성과를 향후 기관 업무에 활용 및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기만료를 앞둔 위원들의 국외출장이 이러한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와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상기 동 사업의 국외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평가 등을 목적으로 하며, 각 출장 일정도 재외공관 관계자·재외선거관리위원·한인단체 면담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만, 재외선거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급 인사가 직접 국외출장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이러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수 위원이 단기간에 연이어 출장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였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잔여임기와 출장 성과의 기관 환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다수의 위원이 단기간에 유사한 목적으로 연이어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도록 출장 시기·인원 등을 조정하는 등 국외출장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세입결산】

4.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채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재)위탁하고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수납률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265조의2⁷⁾에 따라

- 7)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정당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 전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

“공직선거후보자 기탁금, 당선무효된 자 등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금,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후원금 국고귀속액 등”(이하 “국가선거비용”)에 대한 수납액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11억 2,500만원이며, 38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3억 9,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4억 6,200만원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B)	징수 결정액(C)	수납액 (D)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2026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A)							
1,125	1,125	-	1,125	3,859	2,397	1,462	-	1,12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5년 세입예산(예산현액) 편성근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2억 2,500만원,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8억원,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및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1억원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 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5	본 예산	1,125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225 - 귀속대상 후보자 2.5명 × 6선거구 × 기탁금 15 - 국회의원 당선무효 등에 따른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800 -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및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1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каз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정치자금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나.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수납률 제고노력 지속 필요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2025회계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62.1%로 전년(80.9%)보다 하락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6,200만원으로 전년(11억 9,700만원) 대비 2억 6,500만원 증가하였음.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2	3,695	3,695	7,427	6,148	166.4	82.8	1,279
2023	710	710	1,729	476	67.1	27.5	1,253
2024	9,565	9,565	6,263	5,065	53.0	80.9	1,197
2025	1,125	1,125	3,859	2,397	213.0	62.1	1,46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선거비용은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금액인 만큼, 당선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이 당선무효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환수될 필요가 있으나,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평균 12억 9,700만원에 달하여 환수 실적이 저조한 편임.

- 또한, 2026년 초 기준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은 반환명령액 18억 4,135만원에 대한 미반환액 17억 5,835만원으로, 총 16건이며, 이 중 최장 체납 건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관련 1억 8,836만원으로 11년 이상 체납되어 있음. 반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관련 5건은 체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납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는 일반적 채권관리 원칙에 비추어 조속한 정리의 필요성이 높음.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미수납 현황>

(단위: 원, 2026.1.31. 기준)

연번	선거명	반환명령일	반환명령액	미반환액	체납기간
1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4-06-25	188,368,440	188,368,440	11년
2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7-08-01	152,831,380	152,831,380	8년
3		2017-10-11	135,384,090	135,384,090	
4		2017-11-07	77,970,070	64,570,070	
5		2017-12-15	133,428,900	133,428,900	
6		2017-12-23	55,439,890	55,439,890	
7		2018-01-23	49,036,020	40,936,020	7년
8		2018-05-25	44,740,160	44,740,160	
9		2018-07-16	124,940,990	124,940,990	
10		2020-09-14	134,232,310	134,232,310	5년
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2-06-27	77,733,850	77,733,850	3년
1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5-08-12	114,267,530	54,267,530	1년 미만
13		2025-10-02	57,246,060	55,746,060	
14		2025-11-07	205,510,000	205,510,000	
15		2026-01-20	149,521,730	149,521,730	
16		2026-01-16	140,703,670	140,703,670	
총합			1,841,355,090	1,758,355,09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3년 국정감사에서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액의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2025년도 예산심사에서는 미수납액을 고려한 세입 증액 편성을 각각 지적·요구한 바 있으며, 과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2019년)에서도 미반환액에 대한 징수(재)위탁⁸⁾ 소홀로 상당액의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8) 「공직선거법」 제57조제3항,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기탁금 반환 등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후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함.

<국가선거비용 미반환액 소멸시효 완성 현황>

(단위: 원, 2026.1.31. 기준)

연번	선거명	반환명령일	반환명령액	미반환액	소멸시효 완성
1	제17대 국회의원선거	2004-12-21	92,431,710	92,431,710	2010-01-18
2	제18대 국회의원선거	2008-12-31	164,028,432	135,744,222	2014-01-29
3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3-07-01	132,742,977	132,742,977	2018-07-29
4	제19대 국회의원선거	2015-06-10	113,956,920	113,956,920	2020-07-10
합계				474,875,829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임의체납에 따른 미반환액은 자진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미반환에 따른 별도의 이자 부과 등 불이익 조치도 없는 만큼⁹⁾ 미반환금 회수를 위한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국가재정법」 제96조¹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판상 청구, 징수 재위탁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체납된 국가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미반환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를 (재)위탁하는 등 시효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납률 제고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통해, 반환기한까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미반환 사실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해당 선거와 미반환금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10)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세출결산】

5. 대통령선거관리(1131-300)

-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 관리경비 2,900억원 전액이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예비비로 집행되었고 그중 206억원이 불용되었는바, 실제 집행 소요 추계를 예비비 신청 단계에서 정밀화할 필요가 있음.
- 예비비 배정 약 6주 만에 12억원 규모의 임차료 세목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조정액의 73%가 불용되었는바, 세목조정 단계의 소요 산정도 정밀화할 필요가 있음.
- 선거공보 발송에 279억원이 집행되었으나 유권자의 실제 이용률이 낮다는 조사 결과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전자적 방식 병행 등 선거공보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반복적인 선거물품·용역의 대체업체와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경쟁 기반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고착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핵심 물품의 예산 산출기준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과 같이 선거관리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식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대통령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25년은 대통령 궐위로 인하여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5. 4. 8.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같은 해 6. 3. 제21대 대통령선거(궐위선거)가 실시되었음.¹¹⁾

□ 동 사업은 궐위선거의 성격상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고, 2025. 4. 8. 예비비 2,900억 6,100만원이 배정되어 이 중 2,693억 9,900만원을 집행(92.9%)하고 206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음.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	-	-	±1,201	290,061	290,061	269,399	-	20,662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관한 사무중 통일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한다)의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되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하며,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5일[제197조(選舉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舉)의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사유확정일부터 5일을, 연기된 선거와 재투표에 있어서는 늦어도 선거일공고일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2. 선거에 관한 제도·홍보 및 단속사무에 필요한 경비
3. 선거에 관한 소송에 필요한 경비
4. 선거에 관한 소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7. 예측할 수 없는 경비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대통령선거관리는 선거관리일반, 당내경선관리, 선거운동관리, 사전투표관리, 선상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등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당내경선과 같은 후보자 선출부터 선거운동, 실제 투표 및 개표까지를 아우르는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역사업별 세부 예산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내역사업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목 조정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주요 집행내용
선거관리일반	+500	31,060	31,560	29,847	1,713	선거일반사무 12,800, 선거정보시스템 5,827, 위원·간사수당 8,116 등
당내경선관리	-	948	948	28	920	당내경선 위탁관리 (불용률 97.0%)
선거운동관리	-	40,456	40,456	37,875	2,581	선거공보 발송 27,900, 선거벽보 첩부·철거 9,758 등
사전투표관리	△629	83,758	83,129	79,845	3,284	사전투표소 운영 17,211, 수당 등 29,263, 회송·보관 27,580 등
선상투표관리	△41	524	483	401	82	선상투표 관리
투표관리	+170	100,986	101,156	92,947	8,209	투표용지 작성·관리 3,509, 투표소 설비·운영 40,724, 수당 등 48,714
개표관리	-	32,329	32,329	28,456	3,873	개표관리 11,883, 투표지분류기 운영 1,463, 수당 등 15,110
합 계	±1,201	290,061	290,061	269,399	20,66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궐위 대통령선거 예비비 소요 추계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불용액 206억 6,200만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후보자 수(7명)가 예상보다 적어 선거벽보 첩부비용 등 선거운동관리사업 등 집행률 저조(제20대 대선 14명, 제19대 대선 15명 등록)”, “참관인 신고·선정인수가 예상보다 적어 참관인수당 등 집행잔액 발생”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 세목 기준으로는 일반수용비(210-01)의 불용이 121억 2,600만원으로 가장 크고(투표관리 60억 500만원, 개표관리 27억 4,100만원 등),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억 300만원, 특근매식비(210-05) 24억 7,100만원, 일용임금(110-04) 14억 2,600만원, 임차료(210-07) 8억 7,600만원 순임.
- 예비비 산정 및 실제 불용 발생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참관인수당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수당 인상(5만원에서 10만원) 후 참관인이 급증했던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신고 인원은 사전투표참관인 76,447명(제22대 국선 98,080명), 투표참관인 144,822명(172,253명), 개표참관인 7,858명(17,469명)에 그쳐 총 54억 3,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음. ② 군인·경찰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기요금은 신청자를 4만명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신청은 1,976명(4.9%)에 그쳤음. ③ 선거벽보 비닐판 제작비는 15칸 기준(5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8칸(32억 7,800만원)

으로 충분하였음. ⑤ 임차료의 경우 2025. 5. 20. 일반수용비, 특근 매식비 등을 통해 12억 100만원을 세목 조정하였으나 조정필요액 과다 산정으로 세목조정분 중 3억 2,5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 7,600만원은 불용하였음.

<참관인 신고·선정 인원: 편성 기준 대비 실적>

(단위: 명)

구 분	제22대 국선 (2024, 편성 기준)	제21대 대선 (2025, 실적)	차이
사전투표참관인	98,080	76,447	△21,633
투표참관인	172,253	144,822	△27,431
개표참관인	17,469	7,858	△9,6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불용 상위 세목>

(단위: 백만원)

세목	불용액	주요 사유
일반수용비 (210-01)	12,126	투표관리 6,005 · 개표관리 2,741 등 — 후보자 수·참관인 감소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503	선거공보 우편요금 잔액 등
특근매식비 (210-05)	2,471	종사인력 축소 운영
일용임금 (110-04)	1,426	단기인력 채용 축소
임차료 (210-07)	876	세목조정 증액분 미집행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당내경선관리 내역사업은 예비비 9억 4,800만원 중 2,8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97.0%에 이르렀는바, 정당의 당내경선 위탁

여부는 각 정당의 내부 사정,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예비비 신청 당시 실제 위탁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실시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60일에 불과한 궐위선거의 특성과 실제 집행실적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한 경우에는 과거 위탁실적 및 선거 유형별 특성 등을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비비 소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 후보자 수의 감소는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직전 두 차례 대선(14~15명)을 그대로 준용한 것 외에 궐위선거의 단축된 후보 등록 여건이 후보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음.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배정되는 재원인 만큼, 과다 신청분이 사후에 불용으로 반납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국가재정의 가용 재원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의 산정이 요구됨.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수, 참관인 신고율, 당내경선 위탁 실적 등 과거 선거의 집행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선거 유형·일정·실시구역 및 제도변경 등 당해 선거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소요액을 보다 면밀하게 추계함으로써 향후 예비비 신청의 정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다. 임차료 세목조정의 적정성 제고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비 배정(2025. 4. 8.) 약 6주 후인 2025. 5. 20. 동 사업 내 일반수용비(1억원)·특근매식비(2억 3,000만원)·일반용역비(8억 3,000만원)·관리용역비(4,100만원)에서 총 12억 100만원을 임차료(210-07)로 세목조정하였음. 조정 사유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각종 임차료 부족”임.
- 세목조정의 배경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궐위선거로 인구수 등 기초자료 통보가 예비비 편성 이후에 이루어져 수요 예측이 곤란하였고, ②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 및 관공서의 비협조로 투·개표소와 회송차량을 종전과 같이 사례금(일반수용비)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임차 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정이 심화되었으며, ③ 물가상승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임차료 집행 세부내역(주요 항목)>

(단위: 백만원)

항목	집행액
명부단말기 임차	4,346
개표소 집기 임차	2,762
투표함 회송차량(선거일)	2,073
계수기 임차	1,505
임시경사로 설치	1,294
투표함 회송차량(사전투표)	1,270
기타(투·개표소 시설 임차 등)	5,588
임차료 집행 합계	18,83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러나 세목조정으로 증액된 임차료 12억 100만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 2,500만원에 그쳤고, 8억 7,600만원(조정액의 72.9%)이 불용되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에 대해 “향후 정확한 예산 소요 추계로 세목조정의 적정성을 기하겠음”이라고 답변하여 조정 규모의 과다를 사실상 인정하였음.
- 세목조정은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기관 내부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낮은 단계의 예산 조정 수단인 만큼, 그 소요 산정이 부실할 경우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음. 예비비 산정 단계(4. 8.)에서 임차료를 과소 산정하고, 6주 뒤 세목조정 단계(5. 20.)에서는 반대로 과다 산정한 이번 사례는 선거경비 추계 체계 전반의 정밀성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소 및 회송차량 확보 방식(사례금·임차)의 변화 추세를 선거경비 산출기준에 사전 반영하고, 세목조정 시에도 잔여 선거일정 기준의 실집행 가능 규모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라. 선거공보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 「공직선거법」 제65조¹²⁾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16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 1종과 양면 1매의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12)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①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이하 "후보자정보"라 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8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와 예상 거소투표신고인수 및 제5항에 따른 예상 신청자수를 합한 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의 수량은 당해 선거구 안의 세대수에 상당하는 수 이내로 한다.

④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가.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제51조에 따른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 후 2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매세대에는 제출마감일 후 3일까지,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각각 우편으로 발송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동봉하여 발송한다.

나. 전단형 선거공보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10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153조(투표안내문의 발송)의 규정에 따른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이를 동봉하여 발송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확정결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한 세대가 있는 때에는 그 세대에 이를 전단형 선거공보와 함께 추가로 발송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발송신청자에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고, 매세대에는 제153조에 따라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때에,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게는 제154조에 따라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때에 각각 동봉하여 발송한다.

선거공보를 매 세대에 발송하며 전단형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제출·발송 현황>

(단위: 매)

정당	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발송	제출	발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6,062,305	24,167,498	25,446,715	24,050,947
국민의힘	김문수	26,061,460	24,167,498	25,446,715	24,050,947
개혁신당	이준석	26,062,097	24,167,498	25,446,715	24,050,947
민주노동당	권영국	26,062,305	24,167,498	미제출	-
자유통일당	구주와	미제출	-	미제출	-
무소속	황교안	26,062,305	24,167,498	미제출	-
무소속	송진호	26,061,825	24,167,498	미제출	-
합계		156,372,297	145,004,988	76,340,145	72,152,841

주: 선거공보 발송은 세대별로 발송된 선거공보 수를, 제출은 발송에 더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보유한 선거공보를 의미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공보 제출·발송 현황에 따르면, 후보자 7명 중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후보자는 6명인 반면 전단형 선거공보까지 제출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하였음. 즉, 책자형과 전단형을 모두 제출한 후보자는 3명, 책자형만 제출한 후보자는 3명, 두 유형 모두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1명으로, 후보자 수를 기준으로 한 전단형 선거공보의 활용률은 42.9%에 그쳤음.

□ 물량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책자형 선거공보는 1억 5,637만매가 제출되어 1억 4,500만매가 발송된 반면, 전단형 선거공보는 제출수량이 7,634만매, 발송수량이 7,215만매로 책자형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 이와 같이 전단형 선거공보의 실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자형과 별도로 전단형 선거공보를 제작·발송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실질적인 선거정보 제공 수단으로 충분히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종이 선거공보의 제작·발송에는 상당한 재정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책자형 및 전단형 선거공보의 발송량이 총 2억 1,716만매에 달하였고, 이를 접수·정리하고 봉투에 넣어 운송·발송하기 위해 선거공보 발송 인부임 60억 2,900만원, 발송봉투 등 45억 7,300만원, 운송료 6억 2,000만원 및 발송료 166억 5,200만원 등 총 279억원이 집행되었음. 또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는 324억 3,400만원,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310억 9,3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선거마다 수백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최근 선거별 선거공보 발송 관련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세부사업	집행 세목 및 내역		집행액
2022년	1131-300 대통령 선거관리	110-04	선거공보 발송 인부임	5,260
		110-04	선거공보등 접수정리 인부임	756
		210-01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2,356
		210-02	선거공보 발송료	23,132
		210-02	군인등 선거공보 발송료등	930
		합 계		32,434
2024년	1131-301	110-04	선거공보 발송 인부임	4,690

	국회의원 선거관리	210-01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3,297
		210-01	선거공보 등 운송료	319
		210-02	선거공보 발송료	22,669
		210-02	군인등 선거공보 발송료등	118
		합 계		31,093
2025년	1131-300 대통령 선거관리	110-04	선거공보 발송 인부임	6,029
		210-01	선거공보 발송봉투 등	4,573
		210-01	선거공보 등 운송료	620
		210-02	선거공보 발송료	16,652
		210-02	군인등 선거공보 발송료등	25
		합 계		27,9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반면, 종이 선거공보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026년 공무원 노동조합이 유권자 6,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이 공보물을 “자세히 읽는다”는 응답은 11.4%에 불과하였고, “읽지 않는다”(17.5%)와 “봉투째 버린다”(18.8%)는 응답이 36.3%에 달하였으며, 전자공보물 도입에 대한 찬성은 82.7%였음. 공보물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TV 등으로 이미 알고 있음”(55.7%), “공약이 비슷함”(30.7%)이 제시되었음.¹³⁾

□ 아울러 이미 후보자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정책공약알리미에 전자적 형태로 게시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선거공보 작성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윤건영의원안, 의안번호:2204085호 등)이 국회에

13) “공무원 노조 “국민 89%, 선거 공보물 대충 읽고 버린다””(뉴시스, 2026.05.07.)

계류 중인바, 종이형 선거공보의 별도 제작 및 발송, 그리고 자원의 낭비에 관하여 실증적인 평가가 요구됨.

□ 물론 종이 공보는 정보 취약계층(고령층, 디지털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선거정보 접근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으므로 전면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① 세대별 발송 수요조사(수령 거부 세대에 대한 발송 제외) 도입, ② 전자공보 병행 확대와 단계적 전환, ③ 재생용지 사용 및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 ④ 점자형 공보의 면수 제한 개선 등 실효성과 자원 효율을 함께 높이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시점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별·공보 유형별 후보자의 제출률과 유권자의 열람·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특히 활용률이 낮은 전단형 선거공보의 존치 및 별도 발송 필요성을 포함하여 선거공보 제도의 비용 대비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마. 긴급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집중 완화 및 경쟁성 제고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¹⁴⁾에 따르면 국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지명경쟁 또는 수의 계약을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긴급한 행사의 경우 경쟁입찰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다수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긴급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대통령 궐위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므로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보다 준비기간이 짧고, 선거장비·물품의 제작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음.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2025회계연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에 따르면, 동 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은 총 69건, 계약금액은 총 272억 500만원이며, 이 중 “긴급한 행사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를 근거로 체결한 계약은 15건, 209억 7,300만원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7.1%를 차지하고 있음.

<2025회계연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관련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수의계약 사유	건수	계약금액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5건	20,973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계약	22건	336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의 계약	13건	557
특정 기술 또는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등	8건	1,389
국가유공자·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계약	5건	676
경쟁입찰 유찰 등에 따른 수의계약	6건	3,273
합계	69건	27,2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 중 긴급성을 근거로 체결한 15건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2025년 4월 8일 직후인 4월 14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체결되었으며, 이를 사업 성격별로 구분하면 선거장비·물품 관련 계약이 130억 5,000만원(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정보통신·보안 관련 계약은 77억 9,400만원(6건), 인력·프로그램 관련 계약은 1억 2,900만원(2건)임.

<긴급성을 근거로 체결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성격	주요 계약 내용	건수	계약금액
선거장비·물품	투표지 심사계수기·사전투표 명부단말기 임차, 투표소 물품세트·기표대·기표용구·사전투표용 롤 용지 제작·구매	7건	13,050
정보통신·보안	선거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전산장비 임차·성능보강·기술지원, 위성통신망 및 CCTV 구축	6건	7,794
인력·프로그램	시설방호요원 및 공정선거참관단 프로그램 운영	2건	129
합계		15건	20,97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와 같이 대통령 궐위선거는 선거 실시사유 확정 이후 입찰공고·계약체결, 물품 제작·검수·납품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할 때 경쟁계약 절차를 충분히 거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선거일까지 장비와 물품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부 사업에 대하여 긴급 수의계약을 활용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25년 긴급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은 대통령 궐위선거의 갑작스러운 실시로 처음 계약한 업체가 아니라, 과거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용역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해 온 업체인 것으로 나타남.

<긴급성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특정 기업과의 지난 5년간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기업	세부사업	계약건명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수의계약 사유15)
선거장비· 물품 업체 A	[1131-306] 위탁선거관리	민간선거 지원용 기표대 제작·배부	2021-10-05	24,96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5)
	[1131-305] 재외선거관리	재외투표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2021-11-12	37,606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5)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투표지 보관봉투 제작	2022-01-26	18,50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1131-305] 재외선거관리	모의 재외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2023-04-05	12,054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1131-305] 재외선거관리	재외투표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2023-12-18	53,442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5)
	[1131-305]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2025-04-10	77,182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5)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물품세트 제작	2025-04-16	2,737,557	제26조 제1항제 1호가목
정보통신· 보안 업체 B	[1131-302]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2022-01-17	20,00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1131-302] 전국동시지방 선거관리	2022년 양대선거 대비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용역 사업	2022-01-18	489,260	제27조 제3항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양대선거대비 방역 강화를 위한 협력업체 작업공간 등 임차	2022-02-25	9,00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양대선거대비 방역 강화를 위한 협력업체 작업공간 임시설치	2022-02-25	2,50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7132-350] 전산운영경비	선거정보센터 전산운영실 근무공간 재배치	2022-12-05	18,986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7132-350] 전산운영경비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2024년) 계약	2024-04-02	2,675,786	제26조 제1항제 1호가목
	[7111-250] 위원회기본경비	지방의원후원회 도입에 따른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기능개선	2024-06-04	20,000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1133-331] 교육연구발전성 [7132-350] 선거연수원운영	신규 도입 전산장비 및 선거연수원 유지보수(2024년)	2024-06-13	288,971	제27조 제3항
	[7132-350] 전산운영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EC 드라이브 용량 증설 사업 계약	2024-11-14	45,320	제26조 제1항제 2호바목
	[7132-350] 전산운영경비	2025~2026년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계약	2024-12-17	3,828,710	제27조 제3항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용역	2025-04-18	464,669	제26조 제1항제 1호가목
	[1131-300] 대통령선거관리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전산장비(하드웨어) 성능보강	2025-04-25	1,261,000	제26조 제1항제 1호가목
	[7132-350] 전산운영경비	재해복구센터 정보시스템 메모리 구매	2025-07-03	1,936	제26조제 1항제5호 가목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예를 들어 선거장비·물품 업체 A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표대, 투표소 물품세트, 투표지 보관봉투 등 선거용 물품의 제작·배부를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총 7건을 체결하였으며, 2021년 및 2023년 재외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에 이어 2025년 4월에도 재외선거 투표소 물품세트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음.

□ 정보통신·보안 업체 B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프로그램 기능개선,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장비 유지보수·임차·성능보강 등 총 1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특히 2022년 전산장비 전문기술지원 용역 이후에도 2024년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와 용량 증설, 2025~2026년 통합유지보수, 2025년 대통령선거 대비 전문기술지원 및 성능보강 등 관련 계약이 지속적으로 동일 업체에 집중되어 있음.

□ 궐위선거와 같이 준비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 온 업체가 사업 내용과 장비·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신속한 계약 이행에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반복될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경우 긴급 상황마다 기존 거래업체가 사실상 우선적인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선거용 물품 제작이나 정보통신·보안 분야와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장기간 지속되면 해당 업체를 중심으로 규격, 기술지원 체계 및 업무 노하우가 축적되어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다른 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기존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향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업체를 검토하거나 경쟁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욱 축소되어 다시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이 반복적으로 강화되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선거물품·용역에 대해서는 대체 가능한 업체와 시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복수 업체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술·규격상 진입요인을 점검하는 등 경쟁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수의계약 사유 발생시 특정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에 대한 정기적 점검·평가체계 마련 필요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는 예산 16억 1,500만원 중 15억 8,000만원 집행(97.8%), 3,500만원 국고 반납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 그러나 2026. 6. 3.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 기준의 문제로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2025회계연도 중 이루어진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 변경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을 통상 지방선거가 있는 전년도(이번의 경우 2025년)에 전반적으로 점검·개정하고 있으나, “투표용지 인쇄비” 항목에 대한 별도의 점검·평가 자료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실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인쇄예산 산출액(145억 1,400만원) 대비 집행(예정)액(81억 3,900만원)의 차이가 약 64억원(약 44%)에 달하는 등 예산 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됨.

<최근 주요 선거별 투표용지 인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선거	재원	예산 (현)액	집행액	인쇄 매수(매)	매당 단가	불용액	불용액 처리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국비	1,141	1,219	31,959,903	38.13원	-	불용액 미발생
제1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지방비	12,475	4,472	184,576,090	24.23원	8,003	보전비용 사용후반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4)	국비	2,598	3,273	62,806,190	52.12원	-	불용액 미발생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	국비	1,615	1,580	31,589,100	50.02원	35	국고환원
제2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6)	지방비	14,513	8,139	174,002,200	46.78원	6,374	보전비용 후 반납(예정)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는 투표용지라는 선거관리의 핵심 물품에 대한 예산 산출기준이 매년 관행적으로 답습되어 왔을 뿐, 실제 인쇄매수 산정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핵심 물품의 예산 산출기준에 대하여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 선거관리 절차 변경 시 위원회 의결절차 준수 필요

- 투표용지 축소인쇄 관련 정책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선거절차사무 개선방안」)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2025년 8월 절차사무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인쇄매수 하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절차사무자문단의 의견수렴(최종 개선안 2025. 9. 26., 편람 개정 의견수렴 2025. 9. 30.~10. 31.)을 거쳐 선거관리과에 제출되었음.
- 그런데 이 방안은 2025.11.24. 제15차 위원회의에 정식 의결안건이 아닌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이라는 문서 속 일부 분량으로 보고되는 데 그쳤고, 이후 2025. 12. 10. 사무총장 전결로 종합관리지침이 승인되었으며, 2025. 12. 24.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개정이 최종 승인되었음. 특히 해당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국외출장 중(2025. 11. 14.~11. 23. 덴마크·스웨덴)이어서 상임위원 결재로 소집된 회의였으며, 다수의 위원이 이 사항이 위원회의에 보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
-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선거의 정상적 실시에 직결되는 핵심 사항으로서, 그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단순한 사무적·행정적 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 사항으로 보아야 함. 그럼에도 이를 사무처 내부 전결로 처리하고

위원회의에는 형식적으로만 보고한 것은, 선거관리의 핵심 사항에 대한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 본연의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과 같이 선거관리의 근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정식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내부 의사결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6. 재외선거관리(1131-305)

- 재외선거관의 단신부임은 궐위선거의 단기 파견 구조상 예비비 신청 시점에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족동반 기준의 여비·체재비가 편성되어 대규모 불용(재외선거 인력운영 불용률 52.2%)이 발생하였는바,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 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재외투표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본예산은 100만원(재외투표 운용장비 유지보수 명목)에 불과하였으나 궐위선거로 인하여 예비비 105억 3,800만원이 배정되었고, 예산현액 105억 3,900만원 중 84억 9,100만원을 집행(80.6%)하고 20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재외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1	1	-	-	10,538	10,539	8,491	-	2,048	48

※ 불용률 19.4%로 예비비 배정 사업 중 최고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관리 사업 세부사업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예비비 (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관리	9,414	7,953	1,461	84.5
재외선거 인력운영 (재외선거관 파견)	1,125	538	587	47.8
합 계	10,539	8,491	2,048	80.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는 118개국 22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4,375명 중 258,254명(국외부재자 229,531명, 재외선거인 28,723명)이 명부에 등재되어 205,269명이 투표하였음(명부 등재자 대비 79.5%로 역대 최고, 추정 선거권자 대비 약 10.4%). 재외선거 관리에는 재외공관 인력 547명, 선거관리위원회 인력 538명, 지방자치단체 271명, 접수요원 172명, 투표관리인력 연인원 11,458명 등 총 12,996명이 투입되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관리인력 투입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내역
재외공관 인력	547	정 182, 부 175, 업무보조자 190('25.4월초)
선거관리위원회 인력	538	시·도위원회 34, 구·시·군위원회 504
지방자치단체 인력	271	시·도청 17, 구·시·군청 264
신고·신청 접수요원	172	일용인부임 배정 기준('25.4월말)
투표관리인력(연인원)	11,458	'25.5월 중순
합 계	12,9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재외선거관 파견 여건을 반영한 소요액 산정 필요

- 재외선거 인력운영 세부사업(재외선거관 파견)은 예비비 11억 2,500만원 중 5억 3,800만원만 집행되어 불용률이 52.2%에 이르렀음. 특히 국외업무여비(220-02)는 3억 9,200만원 중 6,400만원(16.3%)만 집행되었고, 그중 파견인력 체재지원 명목은 3억 3,600만원 중 4,500만원(13.4%)만 집행되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유를 “궐위선거로 인해 재외선거관 단신부임(가족 미동반)에 따른 여비 잔액”, “가족여비 및 이전경비 미지출”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즉 예비비는 가족동반 부임을 전제로 가족여비·이전경비·체재비를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전원 단신부임하여 해당 경비가 과소 집행됨.

<재외선거 인력운영 세부사업 여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	집행액	집행률
국외업무여비(220-02) 계	392	64	16.3
- 파견인력 체재지원(가족여비, 이전비 등)	336	45	13.4
- 파견인력 업무지원	56	20	38.5
(참고) 주택임차료(임차료 210-07)	335	292	87.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관 파견은 2025년 4월 출국, 6월 복귀의 약 2개월 남짓한 단기 파견이었는바, 이러한 궐위 등을 이유로 한 단기 파견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사실상 상정되기

어렵다는 점은 예비비 신청 시점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통상적인 1년 단위 파견(가족동반)의 편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한 결과, 세부사업의 절반이 넘는 불용이 발생한 것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산정 시 파견 기간·형태(장기 가족동반/단기 단신)에 따른 차등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궐위선거 등 단기 파견 상황에서 가족동반 전제의 경비가 기계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참고: 2025회계연도 재외선거관 파견 현황>

연번	파견국가	공관명	파견직급	파견시작일	파견종료일
1	베트남	호치민(총)	서기관	25.04.11.	25.06.23.
2	일본	일본(대)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3	일본	오사카(총)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4	중국	중국(대)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5	중국	상하이(총)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6	중국	칭다오(총)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7	필리핀	필리핀(대)	서기관	25.04.11.	25.06.23.
8	호주	시드니(총)	행정주사	25.04.11.	25.06.23.
9	미국	미국(대)	서기관	25.04.11.	25.06.23.
10	미국	뉴욕(총)	서기관	25.04.11.	25.06.23.
11	미국	LA(총)	서기관	25.04.11.	25.06.23.
12	미국	샌프란시스코(총)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13	미국	시애틀(총)	행정주사	25.04.11.	25.06.23.
14	미국	시카고(총)	서기관	25.04.11.	25.06.23.
15	미국	애틀랜타(총)	행정사무관	25.04.11.	25.06.23.
16	미국	휴스턴(총)	행정주사	25.04.11.	25.06.23.
17	프랑스	프랑스(대)	부이사관	25.04.11.	25.06.23.
18	독일	프랑크푸르트(총)	서기관	25.04.11.	25.06.2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 위탁선거관리(1131-30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에서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를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는 바,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탁선거관리 사업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와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1억 3,600만원 중 이·전용(500만원 인건비 전용) 후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을 집행(97.7%)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 3. 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불용액은 금고 합병·무투표당선 등으로 일부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136	136	-	△5	-	131	128	-	3	11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 동 사업 예산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¹⁶⁾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관리경비에 한정되고,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됨에 따라 국회의 결산심사 및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2025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련 위탁단체 부담경비 역시 정부 결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음.¹⁷⁾
- 「국가재정법」 제17조¹⁸⁾는 예산총계주의를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그 예외는 같은 법 제53조에 열거된 사유(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 등)로 한정되는바, 위탁선거관리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개별법상 근거 없이 예산 외로 운용되고 있는 것임.

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하고 선거의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제1호의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탁관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무위탁선거의 경우에는 위탁신청을 한 날)부터 10일까지 관할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계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4. 제79조에 따른 보상을 위한 재해보상준비금

② 동시조합장선거 및 동시이사장선거에서 제7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조합 또는 금고와 그 중앙회가 균분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7) 정부 결산서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5월까지 전년도 위탁선거경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음.

18)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이 문제는 국회가 2016·2018·2019·2021·2023·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반복적으로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온 사안임.

<위탁선거관리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반 관련 국회 시정요구>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3·2024 회계연도 결산	○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 외 운용에 대한 집행 근거 마련 필요
2021 회계연도 결산	○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2019 회계연도 결산	○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
2018 회계연도 결산	○ 위탁선거관리경비 운용의 투명성·적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2016 회계연도 결산	○ ‘특별정려금’ 용어를 순화하고, 세입·세출 외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집행결과를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제도개선)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제78조의2 신설)이 2025.8.14. 공포·시행되어 국회의 재정통제가 일부 강화되었고, 나아가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를 규정하는 개정안(양부남의원안, 의안번호: 제2212401호)이 2025. 8. 27. 발의되어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률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신설된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위탁선거경비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8. 선거보전금(1131-307)

- 선거비용 보전금과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 보전(부담비용)이 하나의 지출결의로 합산 일괄지급되고 있는바, 성격이 다른 두 비용의 회계 구분이 명확히 관리되도록 지급·정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선거보전금 사업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중 일정 요건(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10~15% 득표 시 반액)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가 보전하는 경비와 같은 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부담비용)을 집행하는 것임.
- 2025회계연도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 937억 700만원이 배정(2025. 8. 5.)되었고(편성 내역: 선거비용 보전 887억 6,100만원, 점자형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 부담액 45억 200만원), 전년도 이월액 2,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37억 3,300만원 중 932억 8,100만원을 집행(99.5%)하고 4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선거보전금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	-	26	-	93,707	93,733	93,281	-	452	63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보전비용·부담비용 합산 일괄지급의 회계 구분 관리 필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득표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보전금(예: 국민의힘 440억 745만원)과 점자형 선거공보 등 부담비용(6억 3,826만원)이 하나의 지출결의("보전비용 및 부담비용 지급")로 합산되어 일괄 지급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비용을 각각 결정·통보하되, 지급 기한과 지급 계좌가 동일하므로 합산하여 일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21대 대통령선거 보전비용·부담비용 지급 내역>

(단위: 원)

지급일	지출결의 건명	수령인	금액
2025.8.12.	보전비용 및 부담비용 지급(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45,293,748,850
2025.8.12.	보전비용 및 부담비용 지급(국민의힘)	국민의힘	44,645,716,910
2025.8.12.	부담비용 지급 (개혁신당)	개혁신당	1,496,285,180
2025.8.12.	부담비용 지급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685,505,660
2025.8.12.	부담비용 지급 (무소속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708,431,160
2025.12.19.	보전비용 및 부담비용 지급 조정(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1,251,07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러나 두 비용은 법적 성격이 다름. 선거비용 보전금은 득표율 요건에 따라 전액·반액·미지급이 결정되고 당선무효 시 반환 대상이 되는 반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비용 등 부담비용은 득표율과 무관하게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반환 대상 범위도 다름. 실제

로 득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후보자(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에게는 부담비용만 지급되었음.

- 합산 일괄지급 자체는 행정 효율의 측면이 있으나, ① 지출결의 단위에서 두 비용의 구분이 드러나지 않아 결산·감사 단계에서 개별 검증에 추가 자료가 필요하고, ② 향후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을 명령할 때 반환 대상 금액(보전비용)과 비대상 금액(부담비용의 일부)의 구분 관리가 지급 단계에서부터 명확해야 착오의 소지가 없으며, ③ 2025. 12. 19.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급 조정(-125만 1,070원)과 같이 사후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비용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지출부상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급의 효율성을 유지하더라도 지출결의 또는 그 부속서류 단계에서 보전비용과 부담비용을 구분 기재하고, 사후 조정 시 조정 대상 비용을 명시하는 등 두 비용의 회계 구분이 지급·정산 전 과정에서 관리되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9. 선거장비및물품관리(1131-30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물품 보관·관리 용역의 시·도별 개별계약 구조에서 특정 업체에 다수 지역이 집중되고 있는바, 통합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계약 구조의 효율성과 경쟁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은 기표대·투표함·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의 통합 유지·보수와 선거물품의 통합 보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5억 4,500만원 중 이·전용(8,600만원 인건비 전용) 후 예산현액 24억 5,900만원에서 24억원을 집행(97.6%)하고 5,9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선거장비및물품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2,545	2,545	-	△86	-	2,459	2,400	-	59	1,8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물품 보관용역 계약 구조의 효율성·경쟁성 검토 필요

- 선거물품의 보관·관리 용역(2025년 선거물품관리 내역사업 일반 용역비 15억 900만원 편성, 14억 4,000만원 집행)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특성·운송 거리·창고 면적·수회송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보관시설인 선거지원관(수원 소재, 약 2,010평)에 전국 물품을 보관하는 것은 공간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시·도별 개별계약 방식은 계약 규모가 지역 단위로 분산됨에 따라 경쟁입찰의 유인이 낮아지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실제로 부산·대구·울산·강원·경북·경남 등 6개 시·도의 보관용역을 동일 업체가 수탁하는 등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수탁업체가 일부 업체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행 계약방식이 지역별로 다양한 업체의 참여와 경쟁을 충분히 유도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시·도별 선거물품 집중 보관창고 세부 내역>

시도	업체명	보관장소(주소)	거리	면적	계약방식	계약금액(원)
서울	세이프인	경기 연천군 장남면 장백로 20-32	75km	164㎡	수익계약 (단독입찰)	217,901,220
부산	이디원	경남 김해시 유하동 689-2(3층)	31km	164㎡	협상에 의한 계약	143,369,040
대구	이디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7길 3, 2층	45km	495㎡	수익계약	44,700,000
인천	국제창고	인천 중구 서해대로94번길 100	11km	966㎡	수익계약 (단독입찰)	103,085,200
광주	엠에스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77번길 20	63km	170㎡	협상에 의한 계약	79,845,300
대전	개인사업자	대전 대덕구 오정로 52번길 13	4km	166㎡	수익계약	17,640,000
	개인사업자	대전 서구 변동서로6번길 122	38km	133㎡	수익계약	18,720,000
울산	이디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7길 3	79km	198㎡	수익계약 (여성기업)	22,327,500
경기	CJ대한 통운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82	25km	1980㎡	협상에 의한 계약	398,682,290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희망로 267	50km	430㎡		
강원	이디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천면 차마로 331	75km	300㎡	수익계약 (재공고입찰)	33,715,000
충북	로지스팟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로 246	23km	240㎡	협상에 의한 계약	27,258,000
충남	로지스팟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로 246	76km	230㎡	협상에 의한 계약	23,130,000
전남	동서에너지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2길 63	76km	496㎡	협상에 의한 계약	87,416,950
경북	이디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7길 3	139km	661㎡	제한경쟁	77,823,900
경남	이디원	경북 경산시 자인면 자인로7길 3	91km	1224㎡	협상에 의한 계약	121,222,000
제주	지선	제주 제주시 애월읍 광령9길 10-14	14km	188㎡	수익계약	20,000,000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물품 보관용역은 현행 시·도별 개별계약 외에도 권역별 통합계약이나 중앙 단위의 일괄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 규모를 확대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보관료 절감과 업체 간 경쟁 촉진, 계약관리 업무의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음. 특히 실제 수탁업체가 이미 일정 권역을 중심으로 중복되는 상황이라면, 지역별 운송비와 보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공동발주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보관용역의 계약방식·계약금액·수탁업체 및 수의계약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개별계약과 권역별·통합계약 간 운송비·보관료·계약관리 비용 및 경쟁성 등을 비교하여 규모의 경제와 계약의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관용역 계약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10.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 2025년 11월 독일 국외출장에서 선거 인력·물품 부족으로 인한 투표소 혼란 사례(2021년 베를린)를 명시적 연구주제로 조사하고도, 불과 6개월여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일 유형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국외출장·연구 성과가 실제 선거관리에 환류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선거연수원의 직무교육, 사이버교육,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본예산 12억 4,000만원 중 이·전용(1억 1,700만원 인건비 전용 등) 후 예산현액 11억 2,300만원에서 11억 500만원을 집행(98.4%)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5년에는 직무교육 12개 과정 20회(1,070명), 「선거연구」 제22·23호 발간,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2회 등이 실시되었음.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1,240	1,240	-	△117 ±52	-	1,123	1,105	-	18	1,3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국외출장·연구 성과의 환류체계 점검 및 수립 필요

- 2025년 11월 독일 출장의 결과보고서는 그 조사 배경으로 “베를린은 2021년 9월 연방하원선거 등 4개 선거를 같은 날 치르면서 인력·물품 등 부족으로 투표소에서 혼란이 발생하였고 선거무효 및 재선거가 있었음”을 명시하고, 베를린선거전문가위원회(Expertenkommission Wahlen in Berlin)의 개혁 조치와 드레스덴 우편투표 조작 사건 대응 등을 조사하였음. 즉 선거 인력·물품(투표용지 포함) 수급 실패로 인한 투표소 혼란과 그 재발 방지책이 출장의 명시적 연구주제였음.

<2025년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구 국외출장 실시 내역>

기간	방문국(도시)	방문기관	인원
2025.10.13.~10.19.	미국(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시카고선거위원회, 시카고대학교, 일리노이선거위원회, 워싱턴대학교	4명
2025.11.9.~11.16.	독일(베를린, 드레스덴, 함부르크)	베를린주-미테지구-드레스덴 선거사무국, 베를린 주의회, 베를린자유대학, 하우스리센(함부르크)	4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이 출장으로부터 불과 6개월여 뒤인 2026. 6.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내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소 혼란이 발생하였음. 더욱이 같은 시기(2025. 11.~12.)에 위원회 내부에서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산정기준을 축소하는 방향의 지침 개정이 전결로 진행되고 있었음.

- 해외의 선거관리 실패 사례를 예산을 들여 조사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등 관련 정책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재검토하거나 보완하는데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출장 부서인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와 정책 부서인 선거관리과 간 연구 결과의 공유·검토 등 후속 환류 절차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국외출장·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관련 정책 부서에 의무적으로 회람·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 결과를 기록하는 환류 절차를 신설하며, ② 주요 선거 관련 정책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기존 연구·출장 결과를 참고·검토할 수 있도록 부서 간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③ 국외출장·연구 성과가 실제 제도 개선이나 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11.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반복·유사 신청의 처리 절차를 효율화하여 중대한 불공정 보도에 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재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회의 개최 경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회의별로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수당이 집행되고 있는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정례 회의 경비를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¹⁹⁾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본예산 9,300만원에서 이·전용등으로 900만원이 조정되고, 궐위선거 관련 예비비 2억 6,000만원이 배정되어, 예산현액 3억 4,400만원 중 3억 3,700만원을 집행(97.9%)하고 700만원을 불용하였음.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예산	추경(A)								
93	93	-	△9	260	344	337	-	7	25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 「공직선거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심의제도의 실효성 점검 및 재위반 제재 공백의 입법적 해소 지원 필요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조치한 건수는 총 329건으로, 이 중 177건이 기각되어 기각률은 53.8%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각률 14.2%보다 약 4배 높은 수준임.

<대통령선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조치 실적 비교>

(단위: 건, %)

	구분	계	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주의	공정· 정확· 신속· 충실· 준수· 촉구	기각	기각률
2022	제20대 대선	372	—	7	15	37	260	53	14.2
	제8회 지선	214	2	5	5	10	179	13	6.1
	재보궐	2	—	—	1	—	1	—	—
	합계	588	2	12	21	47	440	66	11.2
2025	제21대 대선	329	—	—	—	8	144	177	53.8
	재보궐	9	—	—	—	2	7	—	—
	9회 지선	1	—	—	—	—	1	—	—
	합계	339	—	—	—	10	152	177	52.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각률이 급증한 원인으로 정당의 이의신청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87.6% 증가하였고,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검증 보도까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수의 이의신청이 심의 결과 기각되었다는 것은 심의 필요성이 낮은 신청까지 위원회에 대량으로 제기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시간이 정작 중대한 불공정 보도를 신속하게 심의하는 데 활용되지 못하고 정당 간 공방이나 반복적인 이의신청 처리에 소진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따라서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의견표명, 이미 심의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반복 신청 등에 대해서는 유사 안건을 통합·묶음 처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인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인용된 152건 중 144건인 94.7%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공정보도준수촉구”였고, 경고 이상의 조치는 한 건도 없었음. 즉, 심의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각된데 더하여 인용된 사건도 대부분 실질적 제재력이 낮은 조치에 그쳤다는 점에서, 예비비를 투입하여 운영한 심의제도가 불공정 선거보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정보도준수촉구는 해당 언론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언론사명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준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없음. 또한, 같은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심의기준을 위반했을 때 조치수준을 상향하여 경고문 게재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경고문 게재 조치 누적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억지력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인 비판·검증 보도나 동일·유사한 반복 신청 등에 대해서는 유사 안건의 통합·묶음 처리, 우선 처리 등 심의절차를 효율화하여 중대한 불공정 보도에 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보도준수촉구 이후 동일·유사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거나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재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위원회의 개최 경비의 세부사업 간 분산 집행 해소 필요

- 2025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회 회의 출무수당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이 아니라 회의 개최 시기와 심의 대상 선거에 따라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음.
- 구체적으로 제1차 및 제20~23차 비선거시기 정례회의는 위원회 기본경비에서, 상반기 재·보궐선거 관련 제2·3차 회의는 재보궐 선거관리 사업의 재배정 예산으로, 제4~19차 회의는 인터넷심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에서 배정받아 각각 집행하였음.

<2025회계연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출무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회차	세부사업	세목	집행금액
1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일반수용비(210-01)	1,050
2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일반수용비(210-01)	1,200
3	재보궐선거관리(1131-303)	일반수용비(210-01)	2,400
4~19	인터넷심의기반조성(1135-313)	일반수용비(210-01)	43,700
20~23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일반수용비(210-01)	7,3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분산 집행이 2025년도 인터넷심의 기반조성 사업의 본예산에 위원회 회의 개최경비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관련 수당의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운영되는 심의기구이고 정례회의 개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회의 출무수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동일한 성격의 회의수당을 회의 개최 시기나 심의 대상에 따라 위원회기본경비, 재보궐선거관리 및 대통령선거관리 등 서로 다른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경우, 실제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의 운영 비용이 예산·결산자료에 정확히 나타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동일한 성격의 비용이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됨에 따라 개별 사업의 집행실적이 왜곡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실제 운영비용과 선거별 소요액 등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정례회의에 필요한 위원수당과 운영경비를 인터넷심의기반조성 사업의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관련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다른 세부사업의 예산을 재배정하여 충당하는 관행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12. 위원회기본경비(7111-25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격려금이 통상업무 수행이나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지급요건과 심사절차를 객관화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 직위를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적용하며, 구·시·군선관위 담당관의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와 근거를 재검토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직책수행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집행지침에 따른 특근매식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한편,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위원회기본경비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상경비로서, 2025 회계연도 예산액 150억 9,900만원 중 이·전용(±) 후 예산현액 149억 5,800만원에서 146억 3,700만원을 집행(97.9%)하고 3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음.

<위원회기본경비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15,099	15,099	-	△443 302	-	14,958	14,637	-	321	15,27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타운영비(210-16)는 각 중앙관서의 기관장 등의 비서실과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운영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시험위원 수당 등을 위한 시험관리비, 축·조의금 및 격려금 등을 위한 비목으로, 위원회기본경비 사업에서 기타운영비는 9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000만원이 세목조정되어 예산현액 9억 7,400만원에서 9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직책수행경비(250-02)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따른 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위원회기본경비 사업에서 직책수행경비는 36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200만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 36억 6,500만원에서 36억 3,200만원이 집행되고 3,400만원이 불용되었음.

<위원회기본경비 사업 중 기타운영비(210-16) 및 직책수행경비(250-02)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기타운영비	984	984	-	△10	-	974	966	-	9	998
직책수행경비	3,667	3,667	-	△2	-	3,665	3,632	-	34	3,69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격려금 지급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²⁰⁾ 기타운영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운영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월정액 등으로 정기 지급하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직원 격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격려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우수부서나 특별한 성과를 거둔 부서에 한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에 편제된 전 부서에 걸쳐 총 3,58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선거준비 격려금 명목으로 총 3,360만원을 지급하였음.

<2025회계연도 격려금(210-16 기타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천원)

조직			지급월	금액
기획조정실	기획국	기획재정과	6, 8, 10, 11	500+1,000+1,000+300
		조직행정과	8	1,000
		선거기록보존소	10	1,000
		시설과	1, 6, 8, 10	1,000+500+1,500+400
	정보관리국		6	1,800
선거정책실	선거1국	선거관리과	5	1,500
		재외선거과	5	500
		선거기반과	11	1,000
	선거2국	정당과	8	1,000
		위탁선거과	10	1,000
		홍보과	6, 12	500+500

20)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63부터 p.165

	법제국	법제과	8	1,000
		해석과	11	1,000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6, 12	500+500
	조사국	조사총괄과	10	1,000
		정치자금조사과	8	1,500
		사이버조사과	6, 12	500+500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	1, 8, 10	1,000+1,500+500	
	교육연수부	11	1,000	
	선거연구부	11	1,000	
사무차장직속	총무과	6, 10	500+1,500	
	인사과	8	1,000	
대변인실	공보과	6, 12	400+500	
의사담당관실			11	800
감사관	감사1과	11	1,000	
	감사2과	11	1,000	
인터넷선거제도심의위			6, 11	300
중앙선거방통위			6	400
중앙선거여심위			6	400
합계				35,800

※이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준비 격려금 명목으로 33,600,000원이 지급되었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2025년 1월에는 “우수부서 격려”를 명목으로 기획운영부와 시설과에 각각 1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지급 사유는 선거 기록관 신축공사장과 청사 주변의 동절기 환경관리 등 해당 부서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시설·청사관리 업무에 대한 노고 격려였음.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성과나 추가적인 기여를 근거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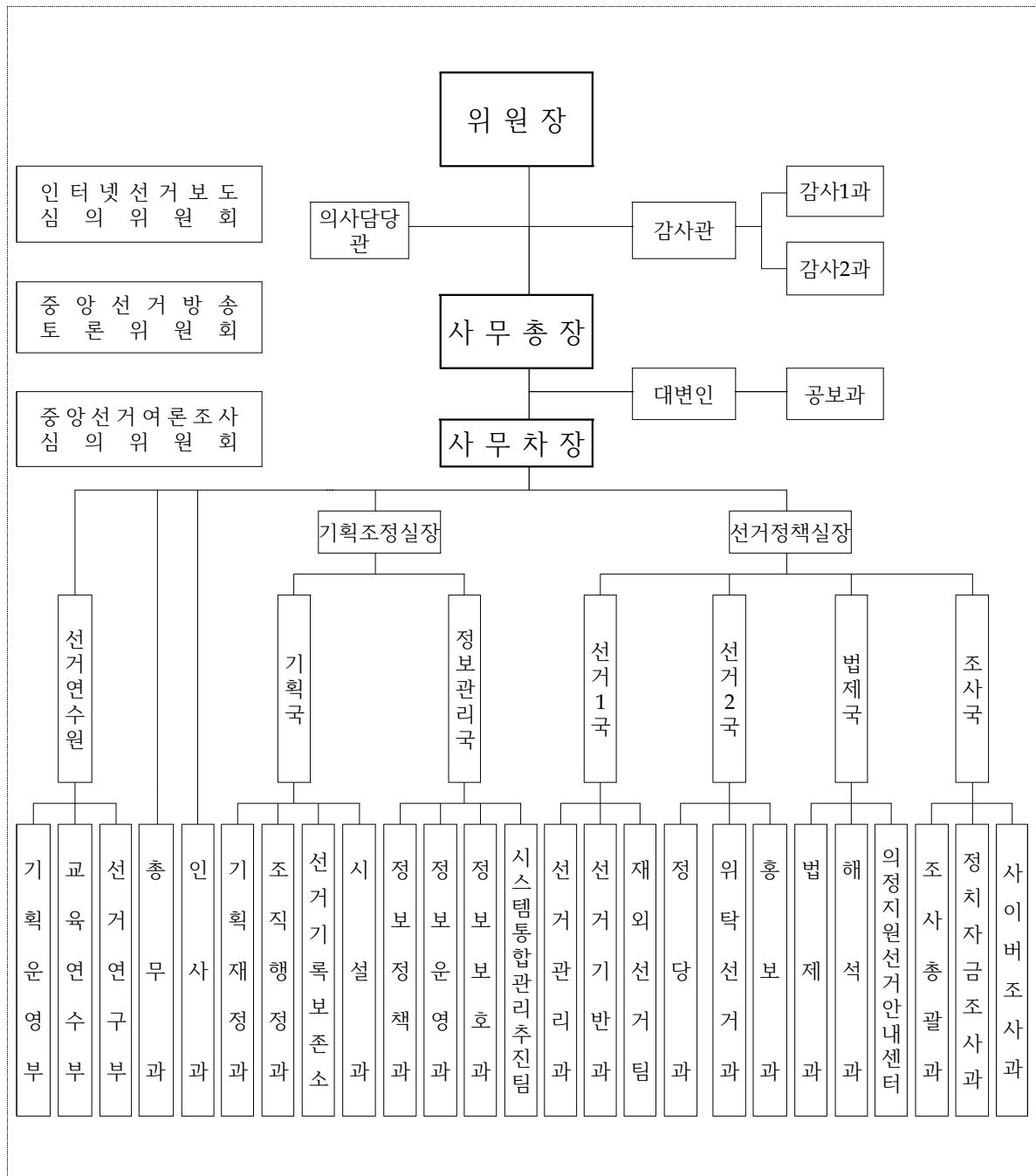
□ 이와 같이 격려금이 특별한 성과나 예외적인 업무 부담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배분된 경우, 격려금이 성과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사실상 내부

직원에 대한 보편적·복리후생성 경비로 운용될 우려가 있음. 특히 동일 부서에 연중 여러 차례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적인 소관 업무 수행을 지급 사유로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집행지침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기적 또는 일반적인 내부직원 격려와 실질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움. 조직도상 전 부서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특별한 업무성과나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기보다 전 부서에 분산하여 지급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종합상황실 편성 조직에 대해서도 15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종합상황실 근무와 관련해서는 특별정려금과 같은 별도의 보상수단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격려금 지급 전에 동일한 업무에 대한 중복 보상 여부와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격려금이 사실상 전 부서에 관행적으로 배분되거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보편적 보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성과 또는 추가적인 업무 기여 등 지급 사유를 구체화하고 통상적인 소관 업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급 대상 선정, 금액 산정, 심사·승인 절차 및 다른 수당·보상과의 중복 여부 확인에 관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사유와 심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등 격려금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직책수행경비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직책수행경비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따른 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해진 지급단가에 따라 지급함. 다만, 국장급 이상 직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고려하여 지급단가의 50% 범위에서 균등 또는 차등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²¹⁾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

(단위: 천원)

유 형	기준액	비 고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중앙기관장	750	※ 갑·을 구분 기준 ·갑 : 현원 6명이상 ·을 : 현원 5명이하
·1급,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조기관	70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기관장	65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갑”	600	
·2·3급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보조기관 “을”	550	
·복수직 3급 “갑”	500	
·복수직 3급 “을”	450	
·4급 기관장	400	
·4급 보조기관 “갑”	350	
·4급 보조기관 “을”	300	
·4급 복수직	150	
·5급 기관장	150	
·5급 보조기관	80	
·6·7급 기관장	80	
·6·7급 보조기관	50	

※ 자료: 기획재정부

- 또한,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에 대한 직책수행경비는 직제상 “과장 직위를 보유”한 자에 한하여 지급됨.

2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80부터 p.182

□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²²⁾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사무처 과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도록 하고, 사무국을 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별표 1](179개 해당 위원회 규정)로 정하며,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 사무과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 따르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는 총무과·선거과·지도과 및 홍보과를 두고 각 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또는 사무과에는 선거담당관 또는 선거1계·선거2계와 지도담당관 또는 지도계를 두고, 담당관을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별표 2](62개 해당 위원회 규정)로 별도로 정하며, 담당관은 행정사무관으로, 계장은 행정주사 또는 행정주사보로 보하도록 하고 있음.

22) 「선거관리위원회법」 ⑩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처와 필요한 과를 두며 처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⑪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두며 국장은 4급, 과장은 4급 또는 5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이상의 규정과 직제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책수행경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책수행경비 지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직급(직위)	단가	총 지급액
합계			3,631,807
중앙 위원회	소계		476,330
	위원장	4,350	52,200
	상임위원, 사무총장	2,450	46,234
	사무차장	1,350	16,200
	실장, 1급, 인터넷·토론위·여심위 위원장	1,050	74,946
	인터넷 상임위원	1,000	12,000
	선거연수원장	950	11,400
	국장	900	75,600
	복수직 3급	500	33,560
	4급보조기관(갑)	350	104,739
	4급보조기관(을)	300	19,872
	복수직 4급	150	21,880
	국회 파견직	780	7,699
시도 위원회	소계		1,079,287
	위원장	1,125	226,311
	상임위원	1,000	196,000
	사무처장	850	173,343
	복수직 3급	500	100,234
	토론위·여심위 위원장	400	161,033
	4급보조기관(갑)	350	213,666
	복수직 4급	150	8,700
구시군 위원회	소계		2,076,190
	위원장	400	1,206,611
	4급보조기관(갑)	350	738,535
	5급보조기관(담당관)	80	131,04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훈령)에서 사무처 과장에 부이사관을 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해당 직위에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을 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책수행경비도 3급 공무원이 보직된 경우에는 복수직 3급 단가인 월 50만원을, 4급 공무원이 보직된 경우에는 4급 보조기관 ‘갑’ 단가인 월 35만원을 지급하여 총 3억 1,390만원을 집행하였음.
-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직위를 4급 또는 5급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 훈령에서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보하도록 달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실제로 3급 또는 4급 공무원에게 각각 월 50만원 또는 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고 있어, 법률과 불일치하는 하위 규정에 따른 인사 운영으로 직책수행경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담당관에게 5급 보조기관 단가로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여 총 1억 3,104만원을 집행하였음.
- 그러나 집행지침상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직제상 과장 직위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직책수행경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관련 규정에서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담당관·계장을 각각 별도의 직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당관을 직제상 과장 직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담당관에 대한 직책수행경비 지급의 명확한 근거도 확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과장 직위를 현행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에 부합하는 직책수행경비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한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담당관에 대해서도 직제상 지위와 직책수행경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확인하여 부적정한 집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직책수행경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라. 집행지침에 근거한 예산 집행 및 적정 예산 편성 노력 필요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210-5목)는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또는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지급을 위한 예산임.
- 2025년 동 사업 내 특근매식비 예산이 2억 4,800만원 편성되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타 비목으로부터 1억 3,8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예산현액 3억 8,600만원 중 3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5년도 타 비목에서 특근매식비로의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029)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임차료 (210-07)	16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특근매식비 (210-05)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관리용역비 (210-15)	62			
		기타운영비 (210-16)	10			
세목조정 (*25.1211.)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3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특근매식비 (210-05)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
		임차료 (210-07)	3			
		관리용역비 (210-15)	4			
합계			13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특근매식비 지급단가가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특근매식비 집행소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세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세목조정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인 ‘세목’ 간 예산 조정을 의미하며, 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 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하므로, 임차료(210-07목), 기타운영비(210-16목) 등에서 특근매식비로의 세목조정은 그 자체로는 문제없는 예산집행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세목조정도 이·전용등에 포함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존중 및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이·전용은 지양될 필요가 있는바, 2025년 편성예산 2억 4,800만원의 55.6%에 달하는 금액을 타세목으로부터 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또한 2025년 특근매식비 지급단가가 기존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9,000원/식·인 이내’로 한다는 제한규정이 있으므로,²³⁾ 지급단가 인상이 1

23)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9,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54.

회 지출한도를 늘려주는 것과 별개로, 이것이 편성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될 수 없을 것임.

- 다만, 2024년 특근매식비 예산이 2023년 대비 9,311만원 감액편성되었고, 2025년에는 2024년보다도 660만원이 더 감액되어, 예산편성과정에서 실제 집행소요보다 적은 예산이 반영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2~2025년도 특근매식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세목조정액
2022	347,234	347,234	194,372	-
2023	347,234	347,234	326,886	-
2024	254,120	344,311	310,585	90,191
2025	247,512	385,696	353,473	138,18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결국 2025년도 특근매식비 비목으로의 과도한 세목조정은 적정예산 미편성과 함께 단가상승으로 인한 지출금액 증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특근매식비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실제 지출소요를 바탕으로 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4)

-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필요예산이 과소 반영되어 일부 사업이 미추진되었고, 사업완료 시점도 2027년 이후로 지연되었으므로, 향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추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고 선거·학술 자료 및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13억 900만원 중 12억 6,700만원을 집행(96.8%)하고 4,200만원을 불용하였음.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도									2026년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313	1,313	-	△4	-	1,309	1,267	-	42	5,62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기록관 영구기록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거기록관 건립은 2025년 준공된 선거기록관 내에 선거관리위원회 영구보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장기간 보존하기 위한 시스템(디지털 서고)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 2022년 선거기록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완성하였고, 이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총사업비 검토를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간 총 34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시스템 구축 계획이 수립되었음.

<영구기록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계획(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계	1차(2024)	2차(2025)	3차(2026)
합 계		3,492	349	1,934	1,209
개발	영구기록 관리시스템	2,363	349 (인수·등록, 기준관리 등)	1,374 (보존관리, 폐기, 공개재분류 등)	740 (포맷변환, 서비스관리 등)
인프라	HW	308	-	209 (서버, N스토리지)	99 (B스토리지)
	SW	821	-	451 (검색, 대용량송수신, DBMS, 안티바이러스, OCR 등)	370 (백업솔루션)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해당 계획에 따라 2024년 3억 4,900만원, 2025년 19억 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2024년과 2025년 모두 3억 4,900만원의 예산만 편성·집행되어 본래 계획과 달라진 측면이 있음.

<영구기록물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 변경 전·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변경 전 (비율)	변경 후 (변경 전 예산대비 비율)
사업 예산	1차(24년)	349 (10%)	349 (10%)
	2차(25년)	1,934 (55.4%)	349 (10%)
	3차(26년)	1,209 (34.6%)	1,523 (43.5%)
합 계		3,492 (100%)	2,221 (63.5%)
사업 계획	1차(24년)	◦시스템 기본·통합 기능 분석	좌동(변경없음)
	2차(25년)	◦시스템 기본·통합 기능 구현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전환 ◦유관시스템 연계(전자결재, 사료관리, RFID, 시청각, 전자서명 장기검증 등) ◦1차 장비 도입	◦시스템 기본·통합 기능 설계 ◦시스템 기능 분석·설계
	3차(26년)	◦시스템 서비스 기능 구현 ◦유관시스템 연계(서비스시스템 등) ◦2차 장비 도입	◦시스템 기본·통합 기능 구현 ◦시스템 서비스 기능 구현 ◦유관시스템 연계 - RFID

___: 미추진 과업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승인된 총사업비 규모 및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25년도 19억 3,4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예산안에 3억 4,900만원만 편성되어 이에 맞춰 계약금액 및 과업을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²⁴⁾

24) 「국가재정법」 제3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 이에 총사업비가 34억 9,200만원인 본 사업의 2년차 예산요구액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 이에 따라 기존 계획에 포함되었던 기존 시스템 데이터 전환, 전자결재, 사료관리 등 유관시스템 연계 등 과업이 미추진되었는바, 이는 2027년 예산 반영을 통해 향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그러나, 정보화전략계획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승인까지 받은 사업이 1차년도 사업추진 후 2차년도 예산축소편성으로 일부 과제가 미추진되고, 사업완료 시점도 2027년 이후로 늦어진 것은 사업의 적시성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특히 2025년 준공된 선거기록관 건물이 영구기록물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건립된 것임을 고려할 때, 2026년 현재까지 관련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기록관 건물 준공과 시스템 구축 간 시간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스템 구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본래 취지에 맞는 기록관 및 시스템의 활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추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요예산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대규모 개발사업)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다만, 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4. 청사관리(7132-3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사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부족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매년 타 세목·타 사업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 소요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내역사업의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배정소요가 충족되지 못해 편성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배정소요와 함께 실제 배정되는 인원 수, 평균 충원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관리인력 인건비,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등을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액 250억 500만원 중 이·전용(+13억 5,300만원/△15억 1,300만원) 후 예산현액 248억 4,500만원에서 244억 5,200만원을 집행(98.4%)하고 3억 9,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청사관리 사업 예산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D)	불용액 (E)	2026년 예산액
본 예산	추경 (A)								
25,005	25,005	-	1,353 △1,513	-	24,845	24,452	-	393	26,71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의 연례적 부족 개선 필요

□ 청사 유지관리 내역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예산은 2025년 부족분이 발생하여,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억 5,300만원(2025.8.20. 6억원, 2025.11.20. 4억 5,300만원)을 전용하고 임차료·급식비 등에서 세목조정으로 총 11억 1,900만원을 조정했음에도, 최종적으로 1억 1,9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부정확한 추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청사관리 사업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 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 목 코드	
자체전용 (25.8.20.)	청사관리 (7132-354)	상용임금 (110-03)	600	청사관리 (7132-354)	공공요금 및제세 (210-02)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재원 부족
세목조정 (25.11.20.)	청사관리 (7132-354)	임차료 (210-07)	17	청사관리 (7132-354)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재원 부족
		급식비 (210-04)	49			
자체전용 (25.11.20.)	청사관리 (7132-354)	상용임금 (110-03)	453	청사관리 (7132-354)		각급 위원회 청사관리 공공요금 재원 부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동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예산 부족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과도한 이·전용은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각각 10억 5,800만원과 15억 8,300만원 규모로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같은 기간 각각 1억 3,300만원과 1억 3,100만원의 불용액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3년 이상 반복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청사관리 사업 중 공공요금및제세(210-02)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23	3,166	1,058	4,224	4,090	133
2024	1,927	1,583	3,510	3,379	131
2025	3,032	1,119	4,151	4,032	119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아울러 2025년 12월 16일 동 사업의 임차료·유류비·국내여비·설시설계비 등 10개 세목에서 총 1억 6,000만원이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을 명목으로 인건비에 전용되었는데, 2024회계연도에도 연말인 2024년 12월 18일 “인건비 보수재원 확보”를 위해 4억 1,300만원이 전용된 바 있어 사업 예산이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조정되는 사례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청사관리 사업 중 인건비 보수재원 총당을 위한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명	목-세목		세부사업명	목-세목	
2024	자체전용 (24.12.18)	청사관리 (7132-354)	상용임금(110-03)	285	인건비 (7101-150)	보수 (110-01)	공무원 보수 부족재원 마련
	승인전용 (24.12.18)		임차료(210-07)	19			
			유류비(210-08)	3			
			관리용역비(210-15)	1			
			사업추진비(240-01)	100			
			손실보상금(310-01)	5			
2025	승인전용 (25.12.16)		임차료(210-07)	20			
			유류비(210-08)	15			
			복리후생비(210-12)	2			
			국내여비(220-01)	56			
			사업추진비(240-01)	5			
			손실보상금(310-01)	5			
			기본조사설계비(420-01)	6			
			실시설계비(420-02)	36			
			시설부대비(420-05)	5			
			무형자산(440-00)	1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요금 단가 변동, 청사 임차 현황 등 실제 지출 소요를 정확히 반영한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요원 상용임금 등 인건비성 경비가 상시적인 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집행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사회복지무요원 배정 소요와 충원을 등을 함께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 내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내역사업은 각급 위원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봉급, 급식비, 여비 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상용임금(110-03목), 급식비(210-04목) 등으로 총 10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중 상용임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되는 사회복지무요원의 봉급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의 경우 편성예산 72억 2,900만원 중 3억 7,500만원을 공무원 보수 등으로 전용하고, 예산현액 68억 5,400만원 중 67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9,200만원이었음.
- 한편,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87억 7,900만원을 편성하는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사회복지무요원 봉급이 2024년에 비해 각 계급별로 20% 증가하여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음.

<2024~2025년도 사회복지무요원 봉급표>

(단위: 원)

계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봉급	2024	640,000	800,000	1,000,000	1,250,000
	2025	768,000	960,000	1,200,000	1,500,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그런데, 2025년 편성된 상용임금 예산 87억 7,900만원 중 76억 100만원만 집행되고, 10억 5,300만원이 동 세부사업의 공공요금및 제세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자체전용되었으며, 1억 2,500만원이 불용되어, 총 미집행액 규모는 2024년보다 증가한 11억 7,800만원에 달하고 있음.

<2024~2025년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내역사업 내 상용임금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도	7,229	-	△375	-	6,854	6,759	-	92
2025년도	8,779	-	△1,053	-	7,726	7,601	-	12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편성예산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차년도 예산요구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복지무요원 배정 소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배정 취소 및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편성예산의 일부가 미집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회복지무요원 배정소요가 있더라도 실제 배정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사회복지무요원 복무자가 존재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거주지로부터 1시간 반 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만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배정이 가능하므로, 배정소요가 모두 충족

되지 못하는 경우 편성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보임.

□ 결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회복지무원 배정은 수요와 공급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집행부진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복지무원 배정 소요뿐 아니라 공급 측면도 함께 감안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의 해당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5년 동 기간에 비해 집행액이 더 적어, 2026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집행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되는 상황임.

<2025~2026년도 1~5월 상용임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2025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3,026,890	374,031	765,143	601,216	717,539	568,961
2026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2,736,430	337,789	658,551	593,749	731,001	415,34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7년 예산에는 사회복지무원의 실배정소요, 역대 예·결산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26년 대비 36억원이 감소된 5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편성예산의 미집행과 해당 금액의 타 비목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는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배 문제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와 함께 실제 배정되는 인원 수, 평균 충원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32
02-6788-5343